
2022년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인권영향평가 용역보고서

2022. 12.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목 차

I. 용역 개요	1
1. 용역의 배경 및 목적	3
2. 용역의 수행내용	4
II. 대내외 환경분석	5
1. 외부 환경분석	7
2. 내부 환경분석	10
III. 인권경영 실태조사	19
1. 조사 개요	21
2. 조사 결과	22
IV. 인권영향평가 실시	31
1. 인권영향평가 개요	33
2. 인권영향평가 결과	35
V. 인권경영체계 개선 및 고도화 방안	49
1. 인권경영 실태조사 및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완사항	51
2. 구제절차 개선	56
3. 인권경영 증장기 로드맵 수립	63
부록	69

I. 용역 개요

I. 용역 개요

1. 용역의 배경 및 목적

1) 용역의 배경

-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인권보호 및 존중에 대한 요구 증가
 - UN에서 기업과 인권이행 지침제정 등 인권경영 구체화

- 우리나라에서도 인권경영이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도입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
 - 국가인권위원회는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 및 인권경영 실천 선도 역할 요구
 - 기업에 대한 사회성이나 공공성에 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요성이나 인간존중 경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음

- 인류의 생존과 공동발전을 위한 국가의 의무에 대한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고, 정부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인권경영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인권경영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용역의 목적

- 기관운영과 주요사업의 추진 및 그 결과에 있어,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하여 실제적·잠재적인 인권 리스크 파악

-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방지하고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인권 증진 및 이해관계자 만족도 향상

2. 용역의 수행내용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2022년 인권영향평가 용역은 4개의 과업으로 분류되며, 과업별 세부 수행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세부 내용
대내외 환경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인권 관련 동향 파악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인권경영 추진현황 파악
인권경영 실태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계획 수립 • 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인권영향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영향평가 지표 개정 • 평가 대상사업 선정 • 기관운영·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체계 개선 및 고도화 방안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 강점 및 취약사항 도출 • 중요도·시급도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 • 인권경영 장·단기 추진방향 및 이행방안 제시 • 구제절차 현황 분석 및 매뉴얼 마련

Ⅱ. 대내외 환경분석

II . 대내외 환경분석

1. 외부 환경분석

1) 인권경영 관련 국외 동향

- 인권경영 적용원칙에 대한 국제적 합의 및 규제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국제적 기준은 아래와 같음

구분	세부 내용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1976년)	• 일반정책, 고용, 훈련, 노동조건·생활조건, 노사관계 등 5개 분야에서 노동인권 관련 상세한 지침 제공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ILO 3자선언 (1977년)	• ‘인권’ 조항에서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에 대하여 국제적 인권의 프레임워크, 국제적 인권의무 및 관련 법, 기업 내에서 권고해야 할 사항 등 총 6가지를 제시(2011년 개정)
SA(Social Accountability) 8000 (1997년)	• 아동노동, 강제노동, 건강·안전, 결사의 자유, 차별, 징계, 근로시간, 보수, 관리 등 인권보호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노동에 있어서 기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 (1998년)	•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실효적 폐지, 작업장 차별금지 등 8개 핵심 협약에 대한 존중·실현 의무 명시
UN 글로벌 콤팩트 (1999년)	• 세계인권선언, 노동에 있어서 기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 환경과 개발에 대한 리우 선언, UN 부패방지협약 등을 기초로 하여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대 분야 10대 원칙 제시
GRI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 (2000년)	• 투자, 차별금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아동노동, 강제노동, 보안 정책, 지역주민 인권 평가, 공급자 인권영향평가, 인권고충처리 메커니즘 등에 관한 보고 요구
ISO 26000 (2010년)	• 환경, 인권, 노동관행, 지배구조,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 공정거래, 소비자 이슈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제시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2011년)	• 보호(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할 국가의 의무), 존중(인권존중에 관한 기업의 책임), 구제(실효성 있는 구제책 마련) 프레임워크
ILO 폭력 및 괴롭힘 협약 (2021년)	• 직장에서의 폭력이나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채택된 최초의 국제협약. 모든 노동자들이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인정하고 공동의 이행체계 제시
EU 환경·인권실사 의무화법 (2024년 시행 예정)	• 기업 공급망 전체의 환경·인권보호 등 현황에 대한 실사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도입 추진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인권영향평가 용역

○ 인권경영과 관련 주요 선진국 정부의 동향은 아래와 같음

구분	세부 내용
유럽연합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실사 및 기업책임에 관한 지침 채택 (2021.03) ESG 관련 정책 지속적 수립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등성 마크(Equality Label) 제도를 통해 기업 내 양성평등 장려를 위한 인증기준 별도 마련 유럽 최초로 '기업인권 모니터링의무법(French Corporate Duty of Vigilance Law) 제정 (2017.02). 프랑스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 일어난 노동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
덴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기업부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인간과 이윤(People and Profit)"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중소기업이 전략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교육 국가인권기구인 덴마크 인권연구소에서 인권영향평가 지침 및 진단 도구 개발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인권경영 및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기업발전위원회(NUTEK), 국제개발위원회(Sida), 전지구적 책임성을 위한 파트너십(외무부 산하기관) 등 다양한 위원회에서 특정 임무 전담 1999년 이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연례 기업보고서 내 환경영향 관련 회계정보 공시 의무 기업의 인권 관련 시행계획(Action Plan for Business and Human Right) 발표 (2015.08)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세계 최초의 영국표준인증기준인 BS8900 도입 세계 최초로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을 수용하기 위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2013.09) 현대판 노예방지법(Modern Slavery Act) 발효(2015.03)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방시민참여네트워크 : 연방정부, 주정부, 지자체, 비영리조직, 교회, 시민사회단체, 기업으로 구성되어 전국 단위의 시민참여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을 촉진 국가, 기업, 시민사회, 노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인권실태 개선에 적극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행동계획 공표(2016.12)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인권선언 및 7개 주요 UN 인권 협약·규약을 비준 캐나다 인권법(the Canadian Human Rights Act), 고용평등법(The Employment Equity Act), 캐나다 노동법(The Canada Labour Code) 등에 의해 국민 권리 보호

2) 인권경영 관련 국내 동향

○ 국제적 인권경영 확산에 따라 국내 인권문화 도입 추진하고 있으며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 법무부)을 중심으로 기업과 인권에 관한 사항을 국가의 보호의무로 강조하고 인권경영 제도화 및 피해구제에 대한 과제를 공공기관에 촉구

○ 정부 주요 부처의 동향은 아래와 같음

구분	세부 내용
국가인권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증진행동전략(2021~2025년)」 수립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발간(2014.09)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발간(2018.08)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 출범(2020.06) 「인권수사 제도개선 TF」 발족(2020.06)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정책기본법」 공동추진 및 입법예고(2021.06.30)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평가’,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 14개 주요업무 수립 성희롱·성폭력 범죄 대응을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협의체 구성·운영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설치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 보호 및 존중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 부당노동행위 근절 - 사업장의 안전한 일터 조성 - 채용·보상·처우 등 노동시장 전반에 공정한 일터 조성 강화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공공기관 배포(2019.02) 여성임원 비율 확대, 장애인 고용비율 및 고졸인재 신규채용비율 목표 달성 등 인권 관련 다양한 노력 이행
경제·인문사회연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수월성 증진을 위해 매년 연구기관 평가 실시 연구기관 평가는 연구 분야(800점)+경영 분야(200점), 총 1,000점 만점으로 평점을 집계함 경영분야 지표 중 ‘2-2-2. 사회적 가치’ 지표의 평가요소로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이 18점 배점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세부 평가내용으로 ‘인권경영 추진 노력 및 성과’가 포함됨
산업통상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경영유공 시상식 개최 및 「K-ESG 가이드라인」 발표(2021.12) 정보공시(P),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4개 영역, 27개 범주, 61개 기본 진단 항목으로 구성되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국내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됨

2. 내부 환경분석

1) 경영평가 지표분석

- 인권경영은 2022년 경영평가에서 ‘사회적가치’의 ‘사회적 책임’ 부분 10개의 평가지표 중 하나로 배점은 기본 2점에 가점(감점 요인-직장 내 괴롭힘 발생기관-이 있는 경우에만 평가)과 감점이 각각 2점씩 있을 수 있어 실제적으로 최대 4점의 점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경영평가에서의 인권경영 배점은 아래와 같음

구분	세부 내용
인권경영을 위한 노력과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체계 구축 여부 (0.5점) • 인권영향평가 실시 (0.5점) • 인권경영 실행, 공개 (0.5점) • 구제절차 제공 등 (0.5점)
직장 내 괴롭힘(갑질 등) 발생여부 및 방지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내 괴롭힘(갑질 등) 행위 발생 (감점 2점) • 직장 내 괴롭힘(갑질 등) 사건처리 적정성 및 예방을 위한 노력(가점 2점) <p>* 직장 내 괴롭힘(갑질 등) 발생기관에 한하여 평가</p>

- 2022년 경영평가에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인권구축체계는 잘 구축되어 있으나(0.5점 획득) 인권영향평가 미실시로 인하여 해당 항목과 ‘인권경영 실행, 공개’에서 최하점수를 받았음
- ‘구제절차 제공 등’에서는 구제절차 수립과 시행하고 있지만 외부 전문가의 참여로 객관성 확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0.3점 획득)
- 2건의 직장 내 괴롭힘(갑질 등) 행위 발생이 있었으나 적절한 후속조치로 감점 사항에 대해서는 가점으로 만회한 것으로 나타남
- 인권영향평가 실시와 결과 반영, 구제절차의 개선과 직장 내 괴롭힘(갑질 등) 행위 예방을 위한 노력의 지속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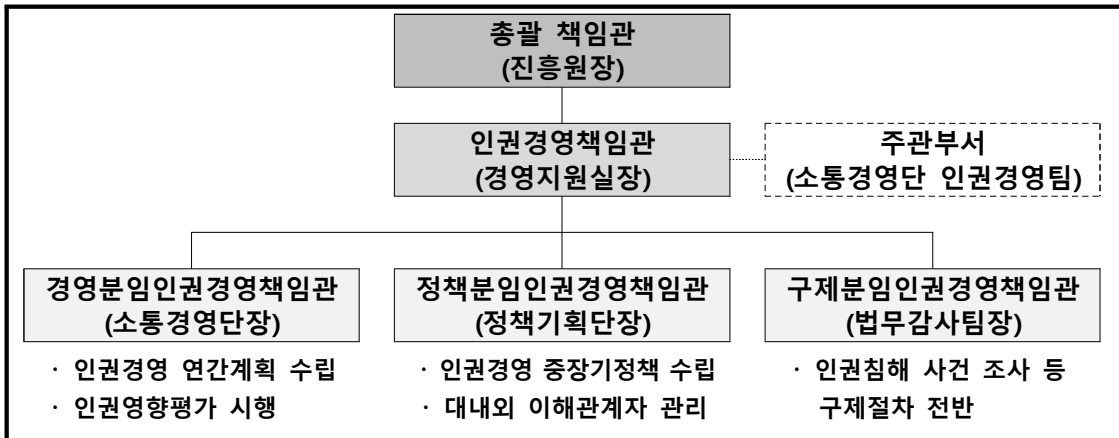
2) 인권경영 세부 추진내용

(1) 인권경영 추진 방향 및 체계

○ 2022년 인권경영과 관련된 비전과 추진 목표는 아래와 같음

비전	인권존중 기반의 新조직문화 구현
추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인권경영 체계 구축 ⇒ 인권경영 중장기정책 수립,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등 • 인권경영 모니터링을 통한 인권경영 환류체계 구축 및 고도화 ⇒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인권경영 실행계획 도출 • 인권보호 노력 및 성과 공개, 인권침해 피해자 보호 확대 ⇒ 인권경영 관련 정보공개 확대, 피해자 권리구제 절차 내실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인권경영 조직 체계는 아래와 같음



(2) 인권경영 체계 구축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위원장, 외부위원 2명, 내부위원 2명 (총 5명)
- 기능: 인권경영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제시 및 정책제언 등 대안·권고 제시,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결과에 대한 인권리스크 분석 및 조치사항 권고
- 활동: 위원 상견례, 인권영향평가 실시 관련 의결(9월)
인권영향평가 개선사항 도출 및 '23년 인권경영 사업 추진 방향 논의(12월)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인권영향평가 용역

- 인권경영 중장기전략 추진방향 도출
 - 인권경영 추진을 위해 중장기 전략 추진방향 도출 및 실행체계 마련하기 위해 ‘진흥원 미래비전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실시
 - * 과업지시서 상 중장기 발전전략을 기반으로 한 경영전략 실행체계 강화 파트
 - 수행기간 : 2022. 7. 20. ~ 11. 16.(라이언앤코컨설팅)

- 인권증진 내부교육 실시
 -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한 집합교육 실시(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6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8월)
 -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제공하는 사이버교육을 전 임직원이 개별 수강(인권경영의 이해)

- 인권 존중을 위한 건강한 직장생활 지원
 - 임직원 질병예방 및 안전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연 1회)
 - 코로나19 확진자 병가 부여 및 동거가족 확진 시 재택근무제 운영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 시차출퇴근제, 탄력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 운영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및 일·가정의 균형 유지 도모
 - 출산휴가, 육아휴직 장려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태아검진 휴가제도 등 운영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조직문화 조성

(3) 인권경영 환류체계 구축 및 고도화

- 인권영향평가 최초 실시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로 구분하여 실제적·잠재적인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
 - 외부용역을 통하여 11 ~ 12월 중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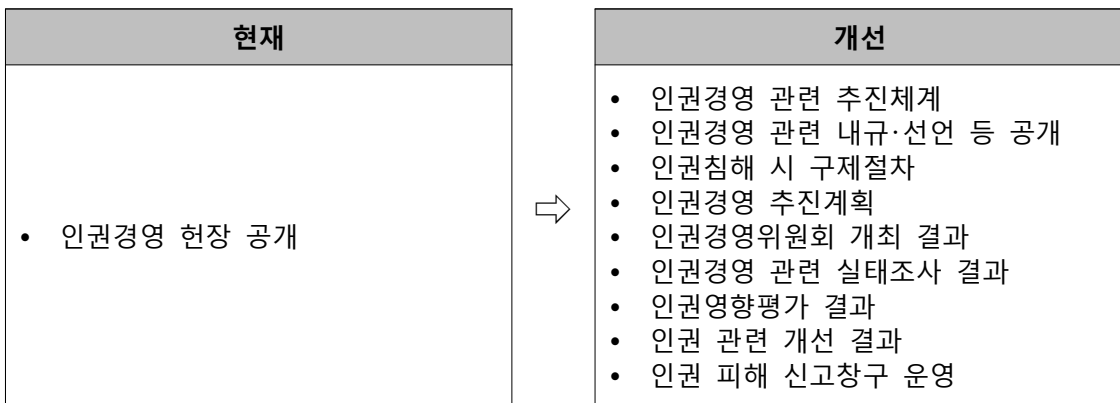
○ 인권경영 실행계획 도출

-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파악된 인권리스크를 분석하여 인권 리스크 발생 가능성 등 검토
- 인권영향평가에 따라 인권 리스크의 심각성이 높게 분석된 사안은 해당 사업부서와 논의를 거쳐 간부회의에서 인권리스크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방지 조치 계획 수립
- 각 관련 부서에 방지조치와 실행방법을 전달하고 수행일정과 성과평가 방법, 평가 지표 등 논의

(4) 인권보호 노력 및 성과 공개, 인권침해 피해자 보호 확대

○ 인권경영 관련 정보공개 확대

- 진흥원 홈페이지 내 인권경영 메뉴 신설하여 인권경영 추진계획 및 인권 관련 개선 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
- 인권경영 주요성과를 대내외 홍보



○ 인권침해 등 사건처리 절차 내실화

- 제도에 대한 전반적 재점검을 통해 피해자 구제 절차의 비효율성 제거 및 실효성 강화하기 위해 인권경영위원회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각종 인권침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한 구제절차 내부규정의 타당성 및 실제 운영에 대한 적법성 등 점검

3) 인권경영 추진체계 및 조직 관련 타기관 참고사례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6년 이상에 걸친 인권경영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으며,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추진단계에 따라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조직체계는 인권경영위원회 아래에 인권경영실무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하고 여러 부서가 인권 관련 업무를 분담하고 있음



(2) 우체국금융개발원

- 우체국금융개발원의 추진체계도 기본방향 아래 추진과제 및 실행과제뿐 아니라 모니터링·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21년 인권경영 목표	모든 업무에서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에 신뢰주는 기관」 및 「함께 일하고 싶은 기관」으로 도약		
인권경영 슬로건	차별은 언택트(UNCONTACT), 존중은 컨택트(CONTACT)		
중장기 로드맵	도입기('18년) 인권경영기반 마련	성장기('19년 ~ '20년) 기관 인권경쟁력 강화	확산기('21년 ~ '22년) 인권경영 고도화 및 확산
기본방향	☐ 인권경영 체계 고도화	☑ 인권 개선 및 보호 강화	☑ 인권존중 의식 확산
추진과제	1. 인권경영 지속성 강화 2. 차별없는 인재 고용·관리 3. 화합의 노사관리	4. 인권증진 워라밸 향상 5. 안전한 환경 및 재난 관리 6. 책임있는 협력회사 관리	7. 지역사회 발전 노력 8. 소비자 인권 보호 9. 체계적인 인권교육 실시 10. 대외 전파 및 홍보 신설
실행과제	1-1. 인권경영 추진조직 운영 1-2. 인권경영 협의체 참여 1-3. 인권영향평가 실시 1-4. 인권경영지수 측정 1-5. 인권실태 진단 신설 1-6. 청렴문화 윤리경영 추진 2-1. 취약계층 채용 확대 2-2. 차별요소 점검·상호 존중 2-3. 여성근로자 보호 및 육성 3-1. 노사협의체 구축 및 운영 3-2. 노사간 의사소통 확대	4-1. 일하는 방식 및 문화개선 4-2. 직무스트레스 해소 4-3. 가족친화 만족도 조사 신설 5-1. 직원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5-2.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5-3. 환경경영 추진체계 고도화 5-4.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6-1. 협력회사의 인권경영 유도 6-2. 협력업체 계약대금 적기결제 신설 6-3.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 6-4. 협력업체 인권교육 확대 신설	7-1.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 7-2. 지역사회의 인권보호 8-1. 정보보안 관리체계 운영 8-2. 정보보안 및 보호 내재화 노력 9-1. 인권교육 프로그램 고도화 10-1. 인권보호 홍보물 제작 신설 10-2. 대외기관 인권교육 및 모범사례 전파 신설
모니터링·환류	점검주체 인권경영책임관, 인권경영위원회 및 하위조직, 월간업무계획보고 회의	점검방법 인권경영 이행현황 점검, 인권영향평가	점검환류 발견된 인권취약요소 개선, 차년도 인권경영 이행 추진계획 반영

- 추진조직으로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권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권경영이행 및 확산을 위한 추진조직을 다양하게 구성하였으며, 각 조직별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인권경영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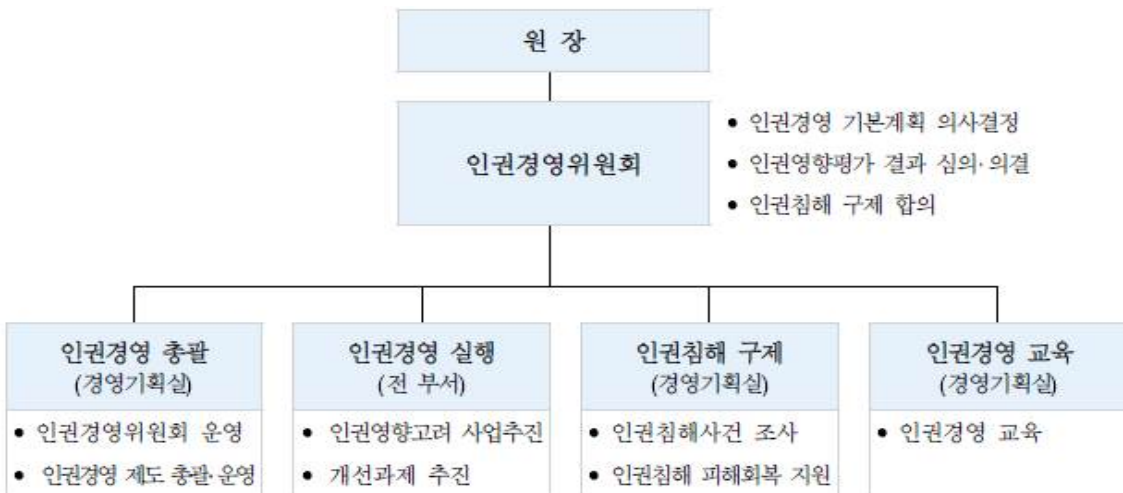
추진조직	주요역할	구성	조직도
인권경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경영 현장 제정 및 개정 인권영향평가 인권경영이행계획 수립 인권경영보고서 인권침해신고 구제 등 	심의 및 의결	
인권영향평가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전체 또는 일부	
인권경영실행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경영 이행 추진계획 발굴·검토 및 이행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개발 및 협의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실태조사 실시 인권경영 추진 관련 사항 공유 및 의견수렴 	단장 : 혁신전략팀장 1단장 5반 12반원	
인권·청렴지킴이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속 실·지사 별 인권 취약점 점검 및 모니터링 인권경영 이행 추진계획 공유 및 의견수렴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 수강 	단장 : 혁신전략팀장 1단장 16단원	

(3)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은 6년에 걸친 단계별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3가지 전략방향과 그에 따른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중기 로드맵	<table border="1"> <tr> <th style="background-color: #d9d9d9;">2022~2023년</th> <th style="background-color: #d9d9d9;">2024~2025</th> <th style="background-color: #d9d9d9;">2026~2027</th>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d9d9;">인권경영 정착</td> <td style="background-color: #d9d9d9;">인권경영 활성화</td> <td style="background-color: #d9d9d9;">인권경영을 통한 ESG경영 구현</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침해 구제절차 마련 인권경영 체계 정립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강화 유관기관·협력사 등에 인권가치 확산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한 인권거버넌스 구축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 </td> </tr> </table>	2022~2023년	2024~2025	2026~2027	인권경영 정착	인권경영 활성화	인권경영을 통한 ESG경영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침해 구제절차 마련 인권경영 체계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강화 유관기관·협력사 등에 인권가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한 인권거버넌스 구축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
2022~2023년	2024~2025	2026~2027								
인권경영 정착	인권경영 활성화	인권경영을 통한 ESG경영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침해 구제절차 마련 인권경영 체계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강화 유관기관·협력사 등에 인권가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한 인권거버넌스 구축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 								
비전	공정하고 차별없는 인권경영 실현									
목표	사람중심 경영으로 신뢰받는 공공기관 구현									
전략방향	<table border="1">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① 인권경영 관리체계 재정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② 인권침해 사전예방</td> <td style="text-align: center;">③ 인권침해사건 대응력 강화</td> </tr> </table>	① 인권경영 관리체계 재정비	② 인권침해 사전예방	③ 인권침해사건 대응력 강화						
① 인권경영 관리체계 재정비	② 인권침해 사전예방	③ 인권침해사건 대응력 강화								
중점과제	<table border="1">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경영 전담부서 구성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직원 인권의식 제고 교육 인권침해요소 자율점검 등 규정 제정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외부 인권침해 구제 절차 확립 인권침해 피해 회복 지원 </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경영 전담부서 구성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직원 인권의식 제고 교육 인권침해요소 자율점검 등 규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외부 인권침해 구제 절차 확립 인권침해 피해 회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경영 전담부서 구성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직원 인권의식 제고 교육 인권침해요소 자율점검 등 규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외부 인권침해 구제 절차 확립 인권침해 피해 회복 지원 								

- 이를 위한 추진조직으로는 원장 아래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인권경영전담팀인 경영기획실이 중심이 되어 있음



(4) 타기관과의 비교 및 시사점

- 인권 관련 중장기 계획은 3단계이며 인권경영의 기반 마련 또는 도입, 활성화 또는 성장, 확산으로 되어 있음
 - 전략 및 과제는 기관의 특성에 따른 차이보다는 거의 공통적인 내용으로 구성됨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추진조직은 원장 아래 인권경영책임관으로 되어 있는데 타기관에서는 인권경영위원회로 되어 있음
 - 인권경영위원회가 설치되기 때문에 조직체계에서도 인권경영책임관 대신에 인권경영위원회로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인권경영에서 주관부서로 인권경영팀이 있지만 세부 역할은 3명의 인권경영책임관에게로 제시되어 있음
 - 업무 수행에 있어서 다른 업무와의 병행으로 인하여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인권경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타 기관에서처럼 관련 역할을 팀에서 할 수 있도록 조정 필요

- 조직체계에 주관부서 및 인권경영책임관으로만 구성되어 있음
 - 주관부서뿐만 아니라 사업부서로도 인권보호 실무조직을 확대하여 사업 특성에 맞는 인권경영 이행을 지원함으로써 인권보호·존중 문화를 전사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개선 추천

Ⅲ. 인권경영 실태조사

Ⅲ. 인권경영 실태조사

1. 조사 개요

1) 추진 배경

- 인권경영 관련 공기업의 선도적 역할 요구 등 사회적 관심 증대
- 실태조사 및 분석을 바탕으로 인권 중요성 인지, 사각지대 해소 등 인권 리스크 사전 예방 및 인권경영 정책발굴 기초자료로 활용

2) 조사 설계

- 임직원 대상 인권경영 실태조사 설계

구분	세부 내용
조사 대상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임직원 97명
조사 방법	• 온라인 무기명 설문조사
조사 기간	• 2022. 11. 15.(수) ~ 11. 20.(일), 6일간
조사 내용	• 인권경영 체제 구축 수준, 인권침해 예방 노력 수준, 인권침해 대응방안 마련 등 3개 항목 16개 문항

3) 설문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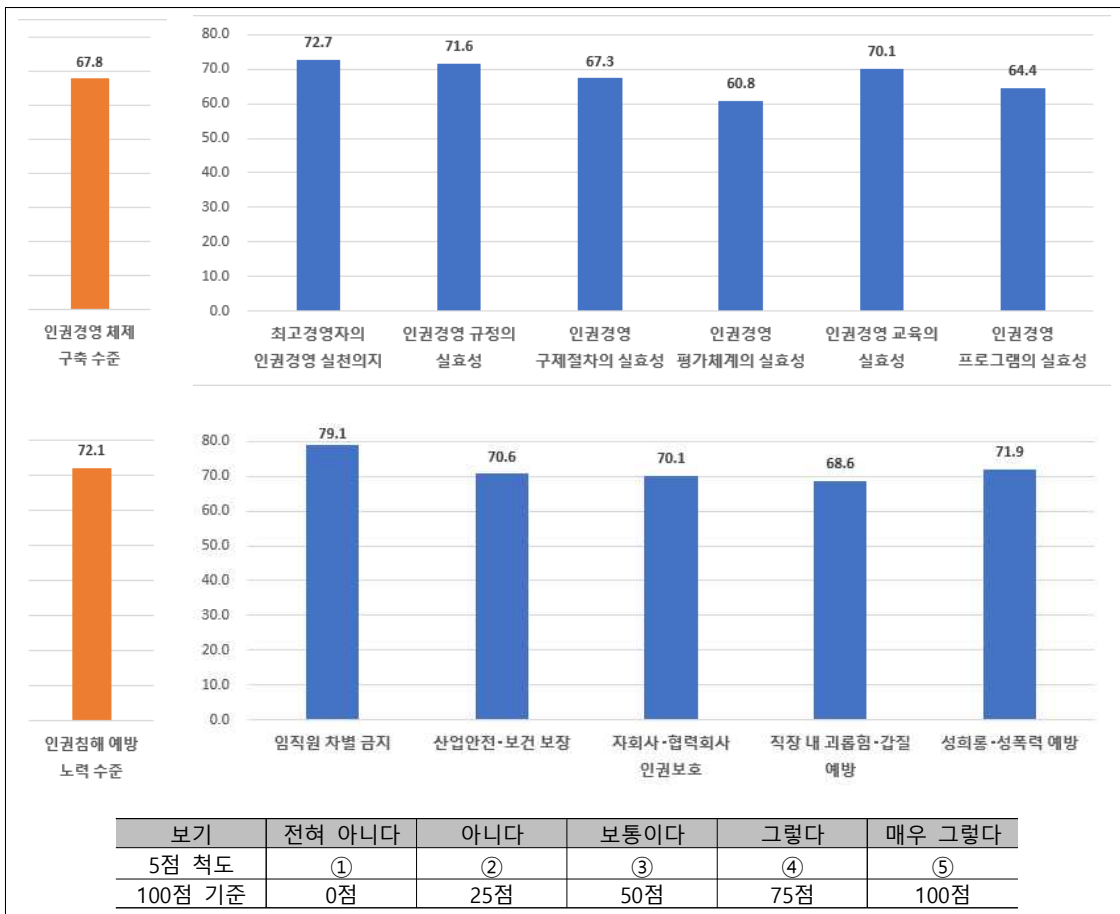
분야	항목	비고
인권경영 체제 구축 수준	1. 최고경영자의 인권경영 실천의지	5점 척도형
	2. 인권경영 규정의 실효성	5점 척도형
	3. 인권경영 구제절차의 실효성	5점 척도형
	4. 인권경영 평가체계의 실효성	5점 척도형
	5. 인권경영 교육의 실효성	5점 척도형
	6. 인권경영 프로그램의 실효성	5점 척도형
인권침해 예방 노력 수준	7. 임직원 차별 금지	5점 척도형
	8. 산업안전·보건 보장	5점 척도형
	9. 자회사·협력회사 인권보호	5점 척도형
	10. 직장 내 괴롭힘·갑질 예방	5점 척도형
	11. 성희롱·성폭력 예방	5점 척도형
인권침해 대응방안 마련	12. 인권침해행위 경험	단일선택형
	13. 경험한 인권침해 유형	단일선택형
	14. 기관에서 침해 가능성 있는 권리	중복선택형
	15. 인권침해행위 경험·목격시 대응	단일선택형
	16. 인권보호·존중을 위한 개선 필요사항	중복선택형

2. 조사 결과

1) 종합 결과

○ 2022년 임직원 대상 인권경영 실태조사에서 5점 척도형을 100점으로 환산할 결과, ‘인권경영체제 구축 수준’ 분야는 67.8점, ‘인권침해 예방 노력 수준’ 분야는 72.1점을 기록함

- ‘인권경영 체제 구축 수준’ 분야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항목은 ‘최고경영자의 인권경영 실천의지(72.7점)’,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항목은 ‘인권경영 평가체계의 실효성(60.8점)’ 으로 나타남
- ‘인권침해 예방 노력 수준’ 분야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항목은 ‘임직원 차별 금지(79.1점)’,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항목은 ‘직장 내 괴롭힘·갑질 예방(68.6점)’ 으로 나타남



- ‘인권침해 대응방안 마련’ 분야에서 인권침해행위를 경험한 비율은 약 15%(총 15건)이며 인권침해 유형으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지시’ (8건), ‘인격무시 언행’ (4건)이 높은 빈도를 나타냄
 - ‘기관에서 침해 가능성이 있는 권리’로는 ‘자유권’ (58명), ‘자기결정권’ (43명), ‘사생활보호권’ (35명), ‘노동기본권’ (31명) 순으로 나타남
 - ‘인권침해행위 경험·목격시 대응’으로는 대부분이(67%) 내부 신고제도 또는 고충처리제도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하고 다음으로 공공기관에 진정 접수(11.3%),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음(8.2%) 순으로 나타남
 - ‘인권보호·존중을 위한 개선 필요사항’으로는 ‘인권침해 구제제도 강화’ (48명), ‘인권경영 실태조사, 인권영향평가 등 정기적 실시 및 결과 공유’ (39명),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매뉴얼, 사례집 등 배포’ (33명) 순으로 나타났고, 기타 의견의 대부분은 처벌을 강화를 요구하는 것이었음

- 인권침해 경험이 높지는 않지만 상당수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대다수가 상하관계에 의한 유형으로 판단됨

- 인권침해 발생시 내부제도를 이용해 해결하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고 개선 필요사항으로도 높게 나타나 관련 사항에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분야별 세부 결과

(1) 인권경영 체제 구축 수준

○ 최고경영자의 인권경영 실천의지



○ 인권경영 규정의 실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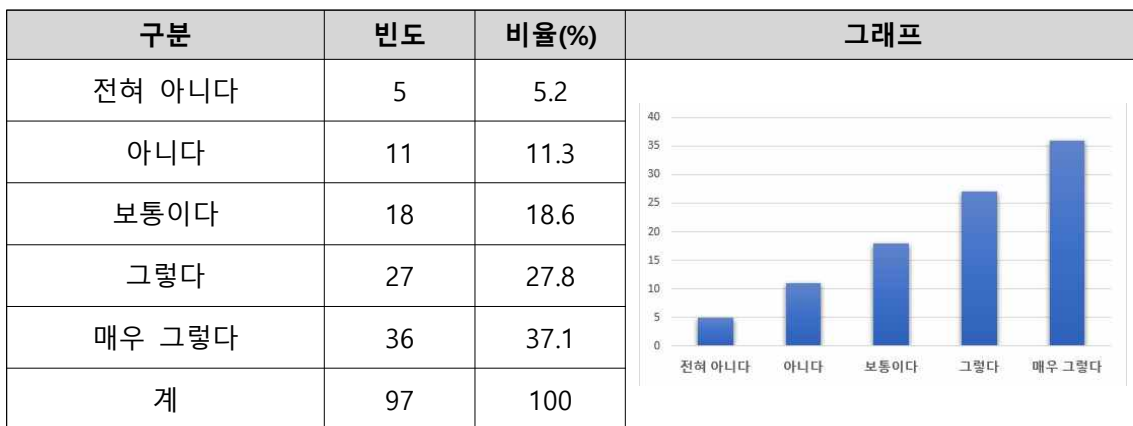
○ 인권경영 구체절차의 실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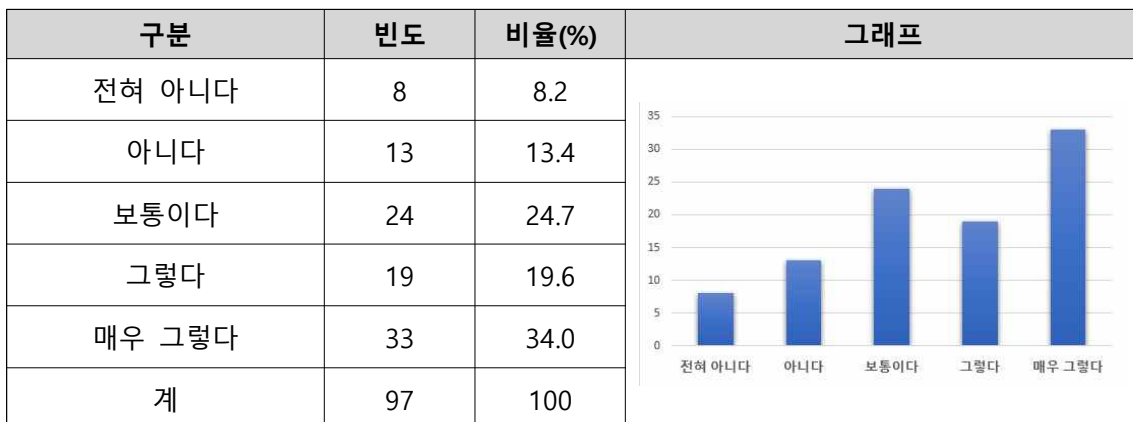
○ 인권경영 평가체계의 실효성



○ 인권경영 교육의 실효성



○ 인권경영 프로그램의 실효성



(2) 인권침해 예방 노력 수준

○ 임직원 차별 금지

구분	빈도	비율(%)	그래프
전혀 아니다	0	0.0	
아니다	5	5.2	
보통이다	17	17.5	
그렇다	32	33.0	
매우 그렇다	43	44.3	
계	97	100	

○ 산업안전·보건 보장

구분	빈도	비율(%)	그래프
전혀 아니다	4	4.1	
아니다	10	10.3	
보통이다	21	21.6	
그렇다	26	26.8	
매우 그렇다	36	37.1	
계	97	100	

○ 자회사·협력회사 인권보호

구분	빈도	비율(%)	그래프
전혀 아니다	4	4.1	
아니다	5	5.2	
보통이다	29	29.9	
그렇다	27	27.8	
매우 그렇다	32	33.0	
계	97	100	

○ 직장 내 괴롭힘·감질 예방

구분	빈도	비율(%)	그래프
전혀 아니다	7	7.2	
아니다	12	12.4	
보통이다	16	16.5	
그렇다	26	26.8	
매우 그렇다	36	37.1	
계	97	100	

○ 성희롱·성폭력 예방

구분	빈도	비율(%)	그래프
전혀 아니다	4	4.1	
아니다	8	8.2	
보통이다	19	19.6	
그렇다	31	32.0	
매우 그렇다	35	36.1	
계	97	100	

(3) 인권침해 대응방안 마련

○ 인권침해행위 경험

구분	빈도	비율(%)	그래프
있다	15	15.5	
없다	82	84.5	
계	97	100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인권영향평가 용역

○ 경험한 인권침해 유형(중복선택)

- 기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지적, 타인 앞에서 큰소리로 모욕감을 주는 등), 부적절 단어 및 은어, 비하 발언, 분위기 조성

구분	빈도	그래프
① 성별에 따른 차별 대우	1	
② 연고관계에 의한 차별 대우	1	
③ 노동권 침해(결사 및 단체교섭 억압, 강제노동 등)	0	
④ 안전·보건상 위험	0	
⑤ 성희롱, 성폭력	0	
⑥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지시	8	
⑦ 인격 무시 언행(폭언, 폭행, 외모비하 등)	4	
⑧ 기타	2	
계	16	

○ 기관에서 침해 가능성 있는 권리(중복선택)

구분	빈도	그래프
① 자유권	58	
② 노동기본권	31	
③ 자기결정권	43	
④ 평등권	14	
⑤ 사생활보호권	35	
⑥ 참여권	17	
⑦ 교육권	11	
⑧ 재산권	4	
⑨ 건강권	18	
⑩ 청구권	4	
⑪ 소비자권리	6	
계	241	

Ⅲ. 인권경영 실태조사

○ 인권침해행위 경험·목적시 대응

- 기타: 퇴사, 제재 요청 등

구분	빈도	비율(%)	그래프
①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내부 신고제도 또는 고충처리제도 이용	65	67.0	
② 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공기관에 진정 접수	11	11.3	
③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	0	0.0	
④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 요청 (법적 대응 준비)	6	6.2	
⑤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에 투고·제보	0	0.0	
⑥ 인터넷, SNS 등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글 게재(기관 이미지 타격)	4	4.1	
⑦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음	8	8.2	
⑧ 기타	3	3.1	
계	97	100	

○ 인권보호·존중을 위한 개선 필요사항(중복선택)

- 기타: 처벌 강화(4명), 인식 개선, 없다 등

구분	빈도	그래프
① 인권경영 이행사항 홍보 강화	16	
②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매뉴얼, 사례집 등 배포	33	
③ 인권경영 실태조사, 인권영향평가 등 정기적 실시 및 결과 공유	39	
④ 인권경영 교육 실시	13	
⑤ 인권침해 구제제도 강화(규정 보완, 홍보 강화 등)	48	
⑥ 기타	6	
계	155	

IV. 인권영향평가 실시

IV. 인권영향평가 실시

1. 인권영향평가 개요

1) 인권영향평가 개념

(1) 인권영향평가의 의의

- 인권영향평가는 기관이 사업 수행의 결과 또는 그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의미함
- 인권영향평가는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서 제시하는 인권 실천·점검의무의 핵심 도구로, 평가 과정을 통해 기관 활동이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부정적 영향이 예상될 경우 이를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관 활동이 인권 친화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도움
- 인권영향평가는 다른 기관과 비교하거나 대외적으로 과시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기관 자체의 인권경영 취약지점을 발견하고,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 예방함으로써 인권침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함

(2) 인권영향평가의 범위와 대상

- 평가범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는 기관활동 전반을 보며,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는 기관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함
- 평가대상: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 체제, 고용, 노동권 등 포괄적 기업활동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는 이해관계자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항목으로 평가를 진행 함.

2) 인권영향평가의 방법

- 인권영향평가는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2018.08.)」을 기준으로 실시함
- 계획 수립 단계부터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인권경영 담당부서와 전문가 협업으로 평가기준 및 지표를 개발하고, 자료수집 및 점검, 전문가 검증 등을 통해 인권에 미치는 실제적·잠재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평가함

구분		세부 내용
1단계	평가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내외 인권 관련 이슈 및 동향 분석 • 진흥원 인권경영 추진현황 점검
2단계	체크리스트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영향평가 대상 주요사업(2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산업 육성 지원, CT산업 육성 • 기관운영 평가지표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진흥원 인권영향평가 지표 기준으로 개정 • 주요사업 평가지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된 주요사업 세부 내용(사업절차, 이해관계자 등) 파악 - 담당자 협의를 통한 최종 확정
3단계	체크리스트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별 담당부서 대상 인권영향평가 관련 실무교육 실시
4단계	인권영향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별 담당부서 자체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별 담당자 체크리스트 작성(1차 서면평가) - 지표별 답변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 전문가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합한 증빙자료 적정성 검토(2차 평가)
5단계	평가결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 종합 분석 • 분야별·사업별 인권리스크 도출 • 시사점 및 개선방향 제시

3) 인권영향평가 지표체계

○ 기관운영: 10개 분야 32개 항목 155개 지표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인권영향평가 지표 항목을 준용 하되, 진흥원에 해당하지 않는 지표 제외하여 구성

분야	항목	지표 총계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1) 인권존중 정책선언	6
	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6
	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5
	4) 인권경영성과	7
	5) 구제절차 마련	6
2. 고용상의 비차별	6) 고용상 비차별	5
	7) 고용상 남녀비차별	6
	8)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3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9)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4
	10)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5
	11)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5
	12) 노동조합 부재시 대안적 조치	2
4. 강제 노동의 금지	13) 강제노동 금지	8
	14) 자회사·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3
5. 아동노동의 금지	15) 연소자 고용 금지	6
	16)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8
6. 산업안전 보장	17) 작업상 안전	5
	18) 임산부 및 자영인 등 보호	4
	19)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5
	20)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3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2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4
	22) 모니터링 실시	2
	23)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4
8.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24)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7
	25)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3
9. 환경권 보장	26)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5
	27) 환경정보의 공개	3
	28)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5
	29) 비상계획 수립	5
10. 소비자인권 보호	30)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6
	31) 사업추진 이상시 조치	3
	32) 소비자 사생활 보호	6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인권영향평가 용역

○ 주요사업: 2개 사업, 각 3개 항목 15개 지표

- 주요사업 선정 기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주력사업 및 대표사업으로서 기관의 지속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 주요사업 선정 사유: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개발하는 것은 인권영향평가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IT산업 육성 지원’ 과 ‘CT산업 육성’ 을 대상으로 체크리스트를 개발
- ‘IT산업 육성 지원’ 과 ‘CT산업 육성’ 을 포괄적으로 보았을때 업무방식이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분야는 나누었지만 동일 지표를 사용하여 평가함

분야	항목	지표 총계
1. IT산업 육성 지원	1) 사업지원 대상 선정	5
	2) 사업관리	7
	3) 구제절차 및 사후관리	3
2. CT산업 육성	1) 사업지원 대상 선정	5
	2) 사업관리	7
	3) 구제절차 및 사후관리	3

2. 인권영향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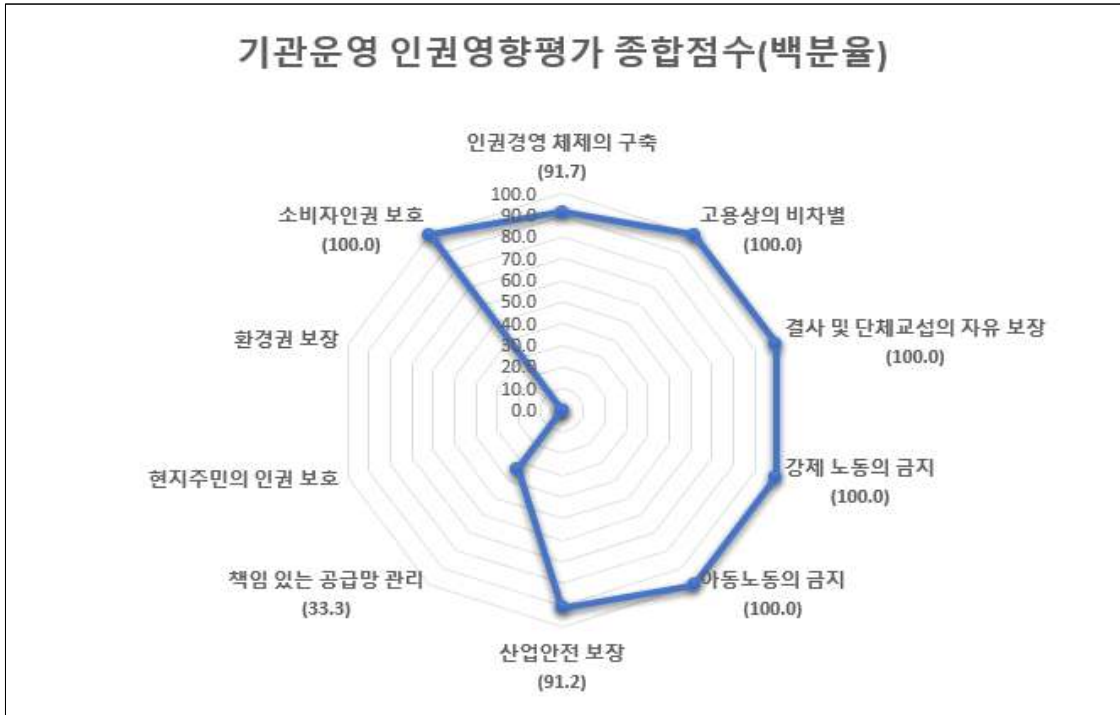
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1) 종합 결과

- 2022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을 제외한 전체 104개 지표 중 92개 지표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백분율 환산 점수는 92.3%로 우수한 상태
-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산업안전 보장’,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분야에서는 일부 보완 필요
 - 특히,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분야에서는 저조한 결과가 나타나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순번	이슈	답변 결과					지표수	득점/ 조정배점	백분율 환산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25	5				30	55/60	91.7%
2	고용상의 비차별	14					14	28/28	100.0%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6					16	32/32	100.0%
4	강제 노동의 금지	11					11	22/22	100.0%
5	아동노동의 금지	4				10	14	8/8	100.0%
6	산업안전 보장	14	3				17	31/34	91.2%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2		4		4	10	4/12	33.3%
8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10	10	0/0	-
9	환경권 보장					18	18	0/0	-
10	소비자인권 보호	6				9	15	12/12	100.0%
합 계		92	8	4	0	51	155	192/208	92.3%

※ 점수 산출식 : [(예×2점)+(보완필요×1점)+(아니오×0점)+(정보없음×0점)]÷(해당없음 제외한 전체문항×2점)



(2) 평가분야별 결과

①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 진흥원은 인권경영헌장 및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정, 인권경영 교육 실시, 인권침해 구제절차 마련 등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적절히 구축한 것으로 확인됨
-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부터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순번	항목	답변 결과					지표수	득점/조정배점	백분율 환산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인권존중 정책선언	6					6	12/12	100.0%
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3	3				6	9/12	75.0%
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4	1				5	9/10	90.0%
4	인권경영성과	6	1				7	13/14	92.9%
5	구제절차 마련	6					6	12/12	100.0%
합 계		25	5	0	0	0	30	55/60	91.7%

※ 점수 산출식 : [(예×2점)+(보완필요×1점)+(아니요×0점)+(정보없음×0점)]÷(해당없음 제외한 전체문항×2점)

IV. 인권영향평가 실시

○ ‘보완필요/아니요’ 로 나타난 세부지표는 아래와 같음

항목	세부 지표	점검 결과
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기관은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보완필요
	기관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또는 집단과의 협의를 한다.	보완필요
	인권영향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보완필요
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기관은 인권준수 감시장치를 마련했다.	보완필요
4. 인권경영성과	보고내용에 대한 검증을 거친다.	보완필요

② 고용상의 비차별

○ 진흥원은 고용 관련 법률을 준수하며, 고용상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채용, 임금, 승진, 퇴직 등 고용 전반에 있어 차별 없이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인권경영 이행지침, 단체협약등을 통해 차별금지 원칙을 표명하고 있음

순번	항목	답변 결과					지표수	득점/조정배점	백분율 환산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고용상 비차별	5					5	10/10	100.0%
2	고용상 남녀비차별	6					6	12/12	100.0%
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3					3	6/6	100.0%
합 계		14					14	28/28	100.0%

※ 점수 산출식 : [(예×2점)+(보완필요×1점)+(아니오×0점)+(정보없음×0점)]÷(해당없음 제외한 전체문항×2점)

③ 결사 및 단체교섭의 보장

○ 진흥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노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인권영향평가 용역

순번	항목	답변 결과					지표수	득점/ 조정배점	백분율 환산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4					4	8/8	100.0%
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5					5	10/10	100.0%
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5					5	10/10	100.0%
4	노동조합 부재시 대안적 조치	2					2	4/4	100.0%
합 계		16					16	32/32	100.0%

※ 점수 산출식 : [(예×2점)+(보완필요×1점)+(아니오×0점)+(정보없음×0점)]÷(해당없음 제외한 전체문항×2점)

④ 강제 노동의 금지

- 진흥원은 인권경영현장, 인권경영 이행지침을 통해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각종 규정을 통해 실제 강제노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순번	항목	답변 결과					지표수	득점/ 조정배점	백분율 환산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강제노동 금지	8					8	16/16	100.0%
2	자회사·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3					3	6/6	100.0%
합 계		11					11	22/22	100.0%

※ 점수 산출식 : [(예×2점)+(보완필요×1점)+(아니오×0점)+(정보없음×0점)]÷(해당없음 제외한 전체문항×2점)

⑤ 아동 노동의 금지

- 진흥원은 인권경영현장, 인권경영 이행지침을 통해 아동노동 금지를 명시하고, 그로 인한 인권침해 위험을 방지함

순번	항목	답변 결과					지표수	득점/ 조정배점	백분율 환산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연소자 고용 금지	4				2	6	8/8	100.0%
2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8	8		
합 계		4				10	14	8/8	100.0%

※ 점수 산출식 : [(예×2점)+(보완필요×1점)+(아니오×0점)+(정보없음×0점)]÷(해당없음 제외한 전체문항×2점)

IV. 인권영향평가 실시

⑥ 산업안전 보장

- 진흥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임산부, 장애인 기타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보호하고 산업재해 피해근로자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반면에, 작업장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비상탈출구 및 작업환경관리 에 보완이 필요하고 위험환경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에 대한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순번	항목	답변 결과					지표수	득점/ 조정배점	백분율 환산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작업상 안전	3	2				5	8/10	80.0%
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4					4	8/8	100.0%
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4	1				5	9/10	90.0%
4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3					3	6/6	100.0%
합 계		14	3				17	31/34	91.2%

※ 점수 산출식 : [(예×2점)+(보완필요×1점)+(아니오×0점)+(정보없음×0점)]÷(해당없음 제외한 전체문항×2점)

- ‘보완필요/아니요’ 로 나타난 세부지표는 아래와 같음

항목	세부 지표	점검 결과
1. 작업상 안전	기관은 비상탈출구가 장애물로 막혀 있지 않으며, 항시 이용가능 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보완필요
	기관은 유해물질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한다.	보완필요
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노동자가 위험한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위험성에 관한 정보가 노동자에게 제공되고, 노동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보완필요

⑦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진흥원은 협력회사 등과 인권보호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조치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규정 및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인권영향평가 용역

순번	항목	답변 결과					지표수	득점/ 조정배점	백분율 환산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4			4	0/8	0.0%
2	모니터링 실시	2					2	4/4	100.0%
3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4		
합 계		2		4			4	4/12	33.3%

※ 점수 산출식 : [(예×2점)+(보완필요×1점)+(아니요×0점)+(정보없음×0점)]÷(해당없음 제외한 전체문항×2점)

○ ‘보완필요/아니요’ 로 나타난 세부지표는 아래와 같음

항목	세부 지표	점검 결과
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기관은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이행을 요구한다.	아니요
	기관은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협력회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아니요
	기관은 모든 계약에 공급업자와 다른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다.	아니요
	기관은 협력회사와 계약 시 인권 보호·존중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아니요

⑧ 현주주민의 보호

○ 진흥원의 성격과 무관한 내용으로 확인됨

순번	항목	답변 결과					지표수	득점/ 조정배점	백분율 환산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7	7		
2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3	3		
합 계						10	10		

※ 점수 산출식 : [(예×2점)+(보완필요×1점)+(아니요×0점)+(정보없음×0점)]÷(해당없음 제외한 전체문항×2점)

⑨ 환경권 보장

○ 진흥원의 성격과 무관한 내용으로 확인됨

IV. 인권영향평가 실시

순 번	항목	답변 결과					지표수	득점/ 조정배점	백분율 환산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5	5		
2	환경정보의 공개					3	3		
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5	5		
4	비상계획 수립					5	5		
합 계						18	18		

※ 점수 산출식 : [(예×2점)+(보완필요×1점)+(아니오×0점)+(정보없음×0점)]÷(해당없음 제외한 전체문항×2점)

⑩ 소비자인권 보호

- 진흥원은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순 번	항목	답변 결과					지표수	득점/ 조정배점	백분율 환산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6	6		
2	사업추진 이상시 조치					3	3		
3	소비자 사생활 보호	6					6	12/12	100.0%
합 계		6				9	15	12/12	100.0%

※ 점수 산출식 : [(예×2점)+(보완필요×1점)+(아니오×0점)+(정보없음×0점)]÷(해당없음 제외한 전체문항×2점)

2)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1) IT산업 육성지원 분야 결과

- 전체 15개 평가지표 중 4개의 지표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고, 11개 지표에서 ‘보완필요’로 평가됨
- 부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사업관리’와 ‘구제절차 및 사후관리’에서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함
- ‘사업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서도 사업지원 대상업체에 인권경영 노력을 확산하려고 노력과 지원대상의 이익제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부서가 있음

순번	이슈	답변 결과					지표수	득점/조정배점	백분율 환산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사업지원대상 선정	3	2				5	8/10	80.0%
2	사업관리	1	6				7	8/14	57.1%
3	구제절차 및 사후관리		3				2	3/6	50.0%
합계		4	11				15	19/30	63.3%

※ 점수 산출식 : [(예×2점)+(보완필요×1점)+(아니오×0점)+(정보없음×0점)]÷(해당없음 제외한 전체문항×2점)

- ‘보완필요/아니요’로 나타난 세부지표는 아래와 같음

항목	세부 지표	점검 결과
1. 사업지원 대상 선정	사업지원 대상업체 접수시 지원받는 업체가 인권경영 실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보완필요
	사업지원 대상선정평가 결과 공개 이후 지원 대상 선정 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원 대상의 이익제기를 확인하고 처리한다.	보완필요
2. 사업관리	업무 담당자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	보완필요
	사업지원 대상업체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않도록 인권보호 및 존중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고 서약서를 징구한다.	보완필요

IV. 인권영향평가 실시

항목	세부 지표	점검 결과
2. 사업관리	사업지원 대상업체가 지원사업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 조치에 대하여 점검하고 관리감독 하는 절차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보완필요
	사업지원 대상자 및 업체의 지식재산권 보호 등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명시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보완필요
	업무처리 과정 중 사업지원 대상자 및 업체 담당자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업무 담당자로부터 갑질 또는 무례한 언행 등 인격침해적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규정을 마련하거나 사전에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한다.	보완필요
	업무처리 과정 중 사업지원 대상자 및 업체담당자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업무 담당자로부터 갑질 또는 무례한 언행 등 인격침해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는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점검한다.	보완필요
3. 구제절차 및 사후관리	사업지원 대상자 및 업체가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의 업무처리 과정 중 인권침해 행위를 경험했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보완필요
	사업지원 대상자 및 업체가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보완필요
	사업수행과정에서 지원대상 업체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 발생 시 제재 조치 및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기관 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적절한 절차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보완필요

(2) CT산업 육성 분야 결과

- 전체 15개 평가지표 중 3개의 지표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고, 12개 지표에서 ‘보완필요’로 평가됨
- 부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사업관리’와 ‘구제절차 및 사후관리’에서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함
- ‘사업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서도 사업지원 대상업체에 인권경영 노력을 확산하려고 노력과 지원대상의 이의제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부서가 있음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인권영향평가 용역

순번	이슈	답변 결과					지표수	득점/ 조정배점	백분율 환산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사업지원대상 선정	3	2				5	8/10	80.0%
2	사업관리		7				7	7/14	50.0%
3	구제절차 및 사후관리		3				2	3/6	50.0%
합 계		3	12				15	18/30	60.0%

※ 점수 산출식 : [(예×2점)+(보완필요×1점)+(아니요×0점)+(정보없음×0점)]÷(해당없음 제외한 전체문항×2점)

○ ‘보완필요/아니요’ 로 나타난 세부지표는 아래와 같음

항목	세부 지표	점검 결과
1. 사업지원 대상 선정	사업지원 대상업체 접수시 지원받는 업체가 인권경영 실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보완필요
	사업지원 대상선정평가 결과 공개 이후 지원 대상 선정 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원 대상의 이의제기를 확인하고 처리한다.	보완필요
2. 사업관리	업무 담당자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	보완필요
	사업지원 대상업체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않도록 인권보호 및 존중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고 서약서를 징구한다.	보완필요
	사업지원 대상업체가 지원사업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 조치에 대하여 점검하고 관리감독 하는 절차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보완필요
	사업지원 대상자 및 업체의 지식재산권 보호 등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명시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보완필요
	업무처리 과정 중 사업지원 대상자 및 업체 담당자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업무 담당자로부터 갑질 또는 무례한 언행 등 인격침해적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규정을 마련하거나 사전에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한다.	보완필요
	업무처리 과정 중 사업지원 대상자 및 업체담당자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업무 담당자로부터 갑질 또는 무례한 언행 등 인격침해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는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점검한다.	보완필요
	사업지원 대상자 및 업체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개선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보완필요

IV. 인권영향평가 실시

항목	세부 지표	점검 결과
3. 구제절차 및 사후관리	사업지원 대상자 및 업체가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의 업무처리 과정 중 인권침해 행위를 경험했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보완필요
	사업지원 대상자 및 업체가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보완필요
	사업수행과정에서 지원대상 업체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 발생 시 제재 조치 및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기관 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적절한 절차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보완필요

V. 인권경영체계 개선 및 고도화 방안

V. 인권경영체계 개선 및 고도화 방안

1. 인권경영 실태조사 및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완사항

1) 단계별 주요 개선과제

- 인권경영 실태조사, 인권영향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진흥원의 인권경영 개선사항을 그 중요도와 시급도에 따라 단계별로 제시하고자 함
 - 중요도는 인권경영 논의의 발생 배경과 개념 및 취지를 고려하여,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와 행복추구권의 차원에서 직접성의 관계로 판단하였음. 예를 들면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인격침해적 언행 등은 직접성이 매우 높으므로 중요도가 큰 것으로 판단하였음
 - 시급도는 기관에서 의지만 있다면 비교적 쉽게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과제는 시급도가 높은 것으로, 인권경영에 관한 사회적 성숙의 정도에 따라 실현되어야 할 것은 중·장기 과제로서 시급도가 낮은 것으로 설정하였음. 예를 들면 직원 인권침해 발생 시 기관 차원에서의 지원은 시급성이 높은 것으로, 협력기관 등에 대하여 인권경영 실천을 요구하거나 모니터링하는 것은 시급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 이러한 취지에서 개선과제는 중요도와 시급도가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우선과제로 선정하여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개선과제	중요도	시급도
1. 인권경영 평가체계의 실효성 강화 (인권경영 실태조사)	상	상
2. 인권경영 프로그램의 실효성 개선 (인권경영 실태조사)	중	중
3. 인권침해 구제제도 강화 (인권경영 실태조사)	상	상
4. 직장 내 상호 존중의 문화 정착 (인권경영 실태조사)	상	중
5.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중	상
6. 작업장 안전을 위한 노력의 강화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상	상
7.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노력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중	하
8. 지원산업 관련 사업관리 개선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중	중
9. 지원사업 구제절차 및 사후관리 개선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상	중

단계	개선과제
우선과제	인권경영 평가체계의 실효성 강화
	인권침해 구제제도 강화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작업장 안전을 위한 노력의 강화
차기과제	인권경영 프로그램의 실효성 개선
	직장 내 상호 존중의 문화 정착
	지원산업 관련 사업관리 개선
	지원사업 구제절차 및 사후관리 개선
장기과제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노력

2) 과제별 개선방안 제시

(1) 우선과제

① 인권경영 평가체계의 실효성 강화

- 인권경영 실태조사, 인권영향평가 등 다양한 평가를 활용하여 정기적 실시·결과 공유하여 인권경영 성과 및 개선사항 점검
 - 인권경영 이행 실적 및 인권침해 위험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
 - 인권경영 실태조사를 기관 내부만이 아니라 협력회사 등의 외부관계자까지 확대
- 모니터링 및 환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월간업무계획보고 회의를 개최
 - 인권경영 추진 관련 사항 공유 및 의견수렴을 강화
 - 인권경영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발견된 인권취약 요소 개선안 마련

② 인권침해 구제제도 강화

- ‘2. 구제절차 개선’ 참고

③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 인권영향평가가 계획한 대로 추진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에서 지표를 기관에 성격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항목을 차후 평가에서는 제거할 수 있도록 개선
 - 주요사업 부분에서는 기관 전체로 보면 미흡한 부서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기관에서 공시하는 인권영향평가 결과와는 별도로 부서별 결과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보완계획을 각 부서별로 수립하여 실행

-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및 관련 조직 강화
 - 새로 설치한 인권경영위원회의 운영이 계획대로 추진 ·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
 - 주관부서뿐만 아니라 사업부서로도 인권보호 실무조직을 확대하여 사업 특성에 맞는 인권경영 이행을 지원

④ 작업장 안전을 위한 노력의 강화

- 근무환경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과제 이행
 - 작업환경측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점검표를 보완하여 위험구역이나 안전에 중요한 구역의 관리를 강화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가 위험한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위험성에 관한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

- 작업장에 대한 비상탈출로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사용 전후 담당자를 정하여 비상탈출구를 관리

(2) 차기과제

① 인권경영 프로그램의 실효성 개선

-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매뉴얼, 사례집 등 배포 확대
- 현재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안 마련
- 인권경영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 변화를 위하여 경영진 대상 인권경영 세미나 개최

② 직장 내 상호 존중의 문화 정착

- 임직원 상호 간에 존중하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하여 홍보, 교육, 캠페인 등 기획 추진
 -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 개최 조직문화 개선 TF 등
- 조직 내에서 인권에 대한 인식 및 정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 및 정보 제공을 강화
 - 각 직급의 권한과 업무범위를 명확화하여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함
 - 팀별 회의에서 부당 지시 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경각심 고취
- 최근 3년간 있었던 기관내 있었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 지시’, ‘인격무시 언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조사하여 사례집을 만들어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해당 유형의 인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관계를 파악하여 가해 가능성이 높은 직급에 대해서는 특별 교육 실시

③ 지원산업 관련 사업관리 개선

- 부서별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잘 수행되고 있는 부서를 참고하여 미흡한 부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잘 되고 있는 부서와 잘 안 되고 있는 부서를 파악하고 각 사업의 특징을 파악하여 특성에 맞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사업에서 인권경영 실태조사, 체크리스트 등 인권경영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연구·마련

④ 지원사업 구제절차 및 사후관리 개선

- 지원산업 관련 사업관리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편차가 있기 때문에 진흥원 전체적으로 표준화된 가이드를 작성하여 모든 부서가 적용할 수 있도록 관리
- 지원사업에서 인권침해 행위 발생 시, 시정 요구를 위한 다양한 조치방안 연구(규정 마련, 계약자료 활용 등)

(3) 장기과제

①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노력

- 계약서 작성 시 인권 관련 조항이 포함된 청렴서약서를 징구하거나 인권보호 미이행 시 관계단절 가능 사항을 인권보호의무 이행 서약서에 포함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협력업체의 인권보호 준수 요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상시 모니터링 수 있도록 함
 - 협력업체 등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함이 사실이나 장기적으로 교육을 확대하고 시스템을 구축
- 협력업체에 인권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온라인 교육, 교육자료 별도 배포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실행

2. 구제절차 개선

1) 현행 인권침해 구제 절차

- 진흥원은 ‘인권경영 이행지침’의 제6장에서 인권침해 구제절차 및 신분보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현재 직장 내 괴롭힘 처리에 대한 처리 절차를 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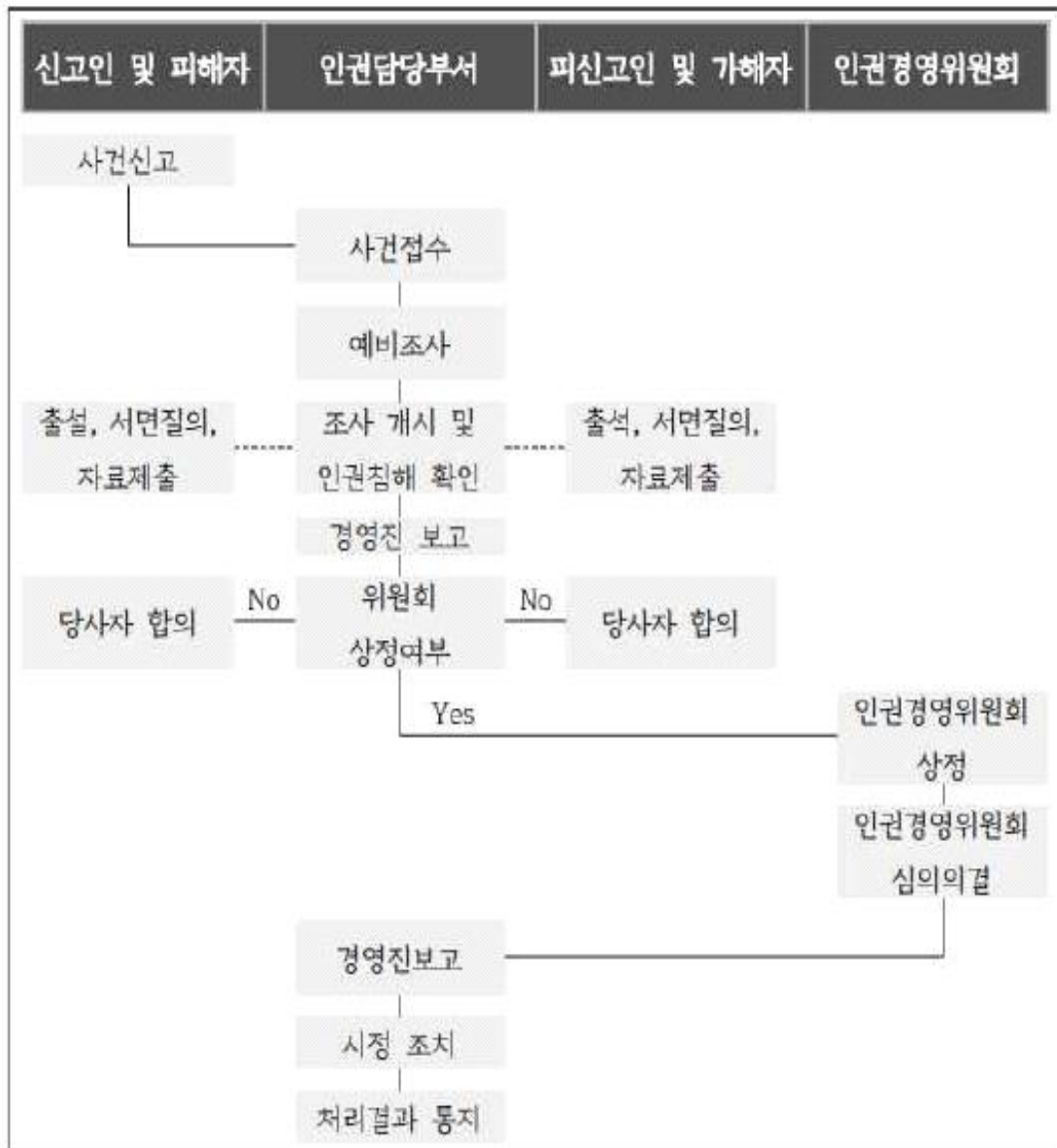


- 인권침해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조사 및 구제 기준이 마련하여 인권 구제절차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이 게시되어 있지 않은데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모두 손쉽게 접근하기 위하여 홍보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타기관 인권침해 구제 절차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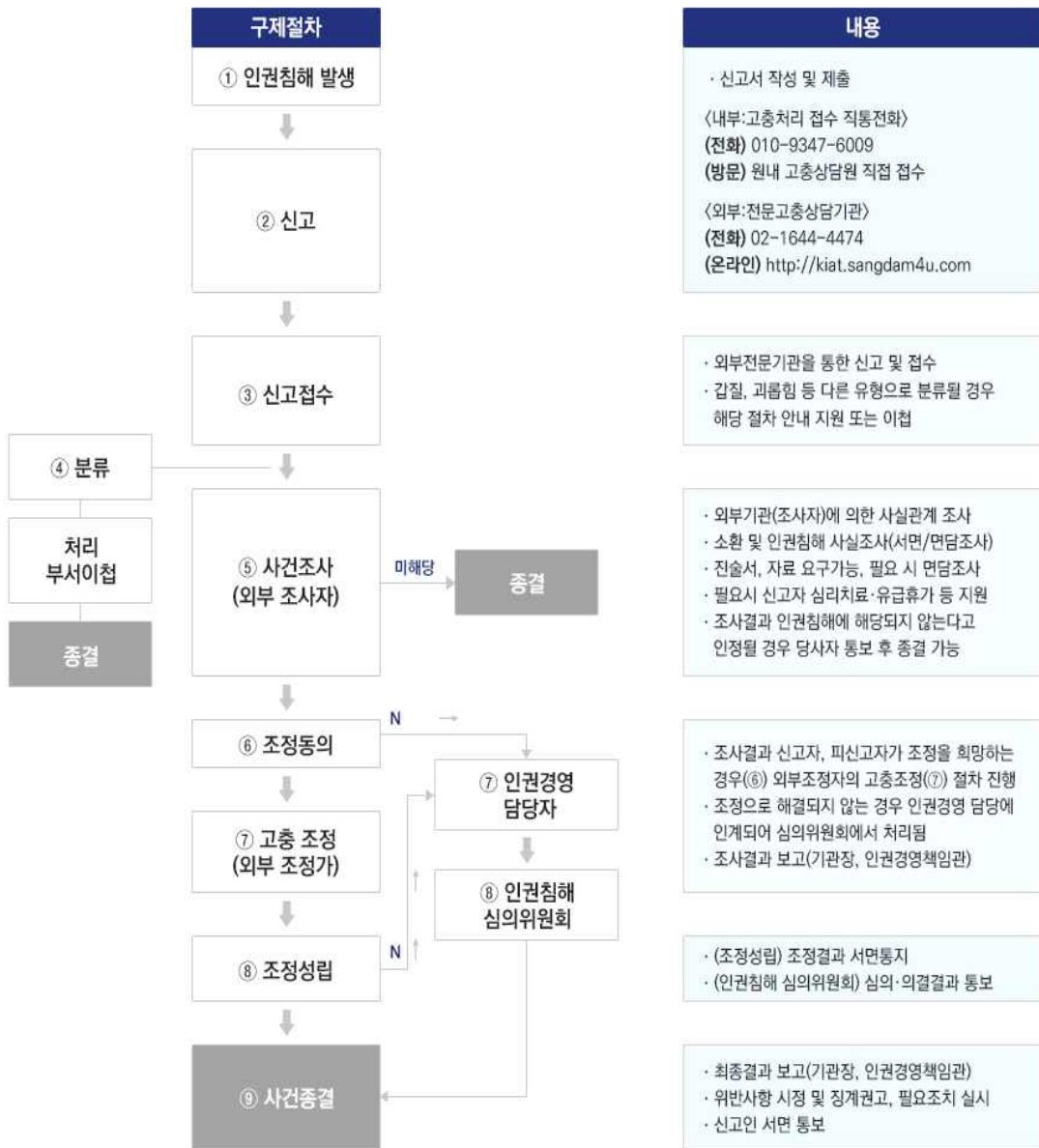
(1) 경기콘텐츠진흥원

- 인권침해 구제절차 운영 매뉴얼을 수립하여 사건 접수→예비조사→사건조사 개시 및 인권침해 확인→경영진 보고→ 인권침해 구제위원회 심의 및 의결→시정조치에 관한 세부내용 수립
- 사안 발생 시 신속한 구제절차 마련을 위해 인권경영위원회 소의원회(총 인원의 과반 수 이상 참석)로 인권침해 구제위원회 구성



(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내부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 구제제도를 홍보하고 있음. 신고 접수창구로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의 신고 접수 채널을 활용하여 구제제도의 공정성 확보하고 상시 구제신청시스템 운영하고 있음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홈페이지 내 인권침해 구제절차 안내 리플렛을 게시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인권침해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단의 처리절차를 안내함. 인권침해 유형, 신고 및 접수처, 구제절차,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어 신고 편의성을 제고함

㉮ 인권침해 유형

갑질, 폭력, 폭언, 모욕, 혐오발언, 괴롭힘, 부당한 근로환경 조성, 평등권 침해, 성희롱 등

㉮ 인권침해 신고 및 접수

인권침해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

㉮ 인권침해 신고 및 접수처

홈페이지	www.kosha.or.kr 민원 > 신고센터 > 청렴윤리 신고 > 갑질-인권침해		
이메일	gamsa@kosha.or.kr 로 송부		
전화	052-245-8113~4	팩스	052-703-0304
방문 및 우편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400, 안전보건공단 6층 감사실 (평일 9시 ~ 12시, 13시 ~ 18시)		

㉮ 인권침해 구제 절차

신고접수 (감사실)	- 홈페이지, e-mail, 전화, 팩스,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접수
고지사항 안내	- 사건관련 법령 및 규정, 사건처리 절차, 외부 구제기관 정보, 비밀보장 등
조사 (감사실)	- 신고인·피해자·피신고인 등 출석,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관련 자료 제출 및 현장조사, 관련 정보조회 등
조사결과 송부	- 조사결과를 이사장 및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 - 소관사항에 따라 관계기관 등에 해당사항 이관
심의의결 (인권경영위원회)	- 위원회에서 조사결과보고서를 심의하여 인권침해여부 결정, 인권침해 시 위반사항 시정 및 조치 권고 - 사안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신고 요구
결정문 통보	- 이사장에게 사건처리결과 통보 - 신고인·피신고인에게 심의의결 결과 서면 통보
시정과 조치	- 피해자 보호 및 관련 임직원 필요 조치 - 재발방지 대책 수립

3) 구제절차 개선사항

- 인권침해 구제기구 설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운영기구로서 인권 침해 전담기구(인권보호센터) 별도 설치

구분	구성
내부위원	경영지원실장, 법무감사팀장, 노동조합 추천(1인)
외부위원	인권경영위원회 외부위원(5인)
간사	인권구제책임관(1인)

- 인권침해 구제절차 모니터링: 구제절차의 효용성, 효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를 통해 지속적 모니터링 및 부진분야 발굴·개선

구제절차 기구 별 역할	
전담기구	역할
주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절차 안내, 인권침해 접수창구 운영, 신고 접수 • 신고사항에 대한 유형별 분류
인권보호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사항 조사 수행(일요시 조사단체 감사실 협조) • 조사내용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권고 • 인권침해 조사 결과서 작성 및 인권위원회 상정
인권경영구제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을 심의하여 권고, 기각, 합의, 이송 등의 결정 - 조정: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조정 결정 - 권고: 비사법적 구제수단(내부), 사법적 구제수단(외부) - 기각: 조사결과 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협력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사항 시정 및 구제방안 시행 • 심의 결정서에 따른 필요조치 이행

- 운영프로세스: 구제절차 제공을 위한 심의 의결기구로 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프로세스 수립
 - 신고 접수: 인권보호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한 신청서 제출을 통해 신고내용을 접수
 - * 인권구제책임관의 각하 또는 조사여부 판단
 - 사건조사 및 합의권고: 인권구제책임관이 당사자에게 인권침해 사실 조사 및 진술서, 자료제출 등 요구, 필요 시 면담조사 수행
 - * 당사자 간의 합의 권고를 할 수 있음(강제적인 합의 권고가 아님)

V. 인권경영체계 개선 및 고도화 방안

- 구제절차: 신고내용을 토대로 인권구제책임관이 인권침해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제위원회에 상정, 구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처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

① 구제위원회 개최 : 인권침해 조사 결과서를 토대로 사건조사 결과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② 구제위원회 심의 : 사실관계와의 증거 등을 토대로 심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심의 결정)
③ 구제위원회 의결 : 신고된 사건에 대한 조사내용을 심의하여 권고, 기각, 합의, 이송 등을 결정
ⓐ 조정 :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조정 결정
ⓑ 권고 : 비사법적 구제수단으로 기관 내부 징계, 제도개선 권고, 사법적 구제수단으로 기관 외부의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법률구조요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의 안내
ⓒ 기각 : 인권침해 사실이 없는 경우
④ 처리결과 통보 :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 처리결과를 양 당사자에게 송달 → 통보를 받은 기관/기업은 14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로 통보, 해당 기간(14일) 내에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위원회는 당해 사안을 10일 이내 재심의

- 기관/기업 통보: 당사자(피신고인, 신고인) 소속 기관/기업의 인사/경영 관련 부서에 의결사항을 통보

*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 당사자 송달

- 당사자 통보: 당사자(피신고인, 신고인)에 구제위원회 의결사항을 통보하고 결과에 불복 시 별도의 외부 구제절차 연계 및 안내

*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 당사자 송달

신고 접수	사건조사 및 조정	구제절차	기관/기업 통보	당사자 통보 및 사건종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 우편, 이메일 신청서 인권 해당여부 판단을 통한 각하 또는 사건조사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침해 사실 조사 진술서 및 자료제출 요구 필요시 실질조사 실시 당사자간 협의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사법적/사법적 구제수단 외부구제절차와의 연계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부서 및 관련 위원회 의결사항 통보 최고경영진 및 경영자 구제 위원회 의결사항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자(피신고인, 신고인) 구제위원회 의결사항 통보 불복시 별도의 외부 구제 절차 연계

구제위원회 개최	구제위원회 심의	구제위원회 의결	처리결과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결정문에 대한 이의제기 후 10일 이내 재개최 인권경영위원, 구제위원 중임 사건조사결과 당사자 또는 관계인 - 진술서 제출요구, 출석요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심의결정) 사실관계와의 증거 등을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을 심의 하여 권고, 기각 합의, 이송 결정 <table border="1"> <tr> <td>조정</td> <td>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조정결정</td> </tr> <tr> <td>권고</td> <td>비사법적 구제수단(내부) 사법적 구제수단(외부)</td> </tr> <tr> <td>기각</td> <td>인권침해 사실 없음</td> </tr> </table>	조정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조정결정	권고	비사법적 구제수단(내부) 사법적 구제수단(외부)	기각	인권침해 사실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 처리결과를 양 당사자에게 송달 처리 결과 통보를 받은 기관은 14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로 통보해야 함 처리결과 통보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위원회는 당해 사안을 10일 이내 재심의
조정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조정결정								
권고	비사법적 구제수단(내부) 사법적 구제수단(외부)								
기각	인권침해 사실 없음								

- 신고의 각하 : 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 신고에 대하여 그 내용에 심각한 흠결이 있거나, 피해자의 의사, 기한의 경과 등의 중대한 이유로 신고를 각하할 수 있음

- ① 신고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④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신고한 경우
*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⑤ 신고가 제기될 당시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 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⑥ 신고가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⑦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 ⑧ 위원회가 기각한 신고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 ⑨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 추가조사: 위원회는 조사미비/진술만으로 사안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진술의 재청취, 당사자 출석요구, 자료 제출요구 등 가능
- 타기관 연계 구제절차 제공: 신고인이 구제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불복 시 조사, 증거확보, 권리구제를 위해 구제위원회 재심의를 가능하며, 필요 시 외부 타 절차와 연계 가능
- *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그 밖의 타기관의 구제절차와 연계하여 신고인의 인권 침해 사실의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함

- 인권 구제제도 홍보: 내부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리플릿 배포, 포스터 부착, 교육 등을 인권 구제제도를 홍보하고,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여 언제든지 쉽게 제도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함

3. 인권경영 중장기 로드맵 수립

1) 인권경영 중장기 비전 및 로드맵

- 진흥원의 경영환경을 반영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환경과 필요에 맞는 고도화를 통해 인권존중 조직문화를 실현하고자 함
- 수립되어 있는 2022년 인권경영 비전에 타기관의 계획을 참고하여 도입, 성장, 확산의 3단계로 구성

비전	인권존중 기반의 新조직문화 구현		
	2022 ~ 2023년	2024 ~ 2025년	2026년 ~
단계	도입기	성장기	확산기
추진목표	인권경영 개선 및 강화	인권경영 관리 및 내재화	인권경영 고도화 및 확산
인권경영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 제도 개선 • 인권침해 구제 절차 개선 및 홍보 • 인권경영 전담조직 구성 원 전문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 제도 개선 • 구제절차 현황 점검 및 현행화 • 인권경영 전담조직 확대 검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 2단계 추진전략 수립 • 인권경영 성과체계 구축 • 인권경영 전담조직 정비 • 구체절차 평가 및 개선
인권영향 평가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개선과제 이행 • 인권실태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영향평가 실시 확대 및 개선과제 이행 • 인권 취약 분야 제도 개선효과 측정(실효성 평가) • 인권실태조사 실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영향평가 실시 확대 지속 및 개선과제 이행 • 인권 취약 분야 제도 개선효과 측정(실효성 평가) • 인권실태조사 실시 확대 계속
인권경영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 홈페이지 신설 • 인권경영교육 및 인권증진 프로그램 개발 • 이해관계자 인권의식제고 및 인권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교육 콘텐츠 등 제공 및 교육실시 지원 • 인권문화 프로그램 개발 (캠페인, 지킴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인구나경영체계 구축 지원 • 외부 협력업체 인권경영 모니터링 체계 구축

2) 단계별 세부추진 계획

(1) 인권경영 개선 및 강화

- 인권경영 제도 개선
 - 인권경영의 효율적 운영 및 기관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한 전담조직 정비
 - 전담부서 뿐 아니라 사업부서로도 인권보호 실무조직을 확대하여 사업 특성에 맞는 인권경영 이행을 지원

- 인권침해 구제 절차 개선 및 홍보
 -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운영기구로서 인권침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구제절차 운영프로세스 구축 및 모니터링
 - 인권침해 사전 예방 및 기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안내 강화

- 인권경영 전담조직 구성원 전문성 강화
 - 외부기관 전문 교육 이수, 대외 인권경영 워킹그룹 참여 등을 통하여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원 전문역량 강화

-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개선과제 이행
 -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

- 인권실태조사 실시
 -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권 취약점을 파악하고 개선

- 인권경영 홈페이지 신설
 - 현재 홈페이지에 인권경영에는 인권현장만 업로드되어 있는데 인권경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정보 확산 및 이용의 편의를 도모

V. 인권경영체계 개선 및 고도화 방안

- 인권경영교육 및 인권증진 프로그램 개발
 - 인권경영 비전에 부합하는 신규 활동 및 제도개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공모전 개최
 - 인권경영 이해도 증진 및 인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 이해관계자 인권의식제고 및 인권보호 강화
 - 인권경영 관심도 증대를 위한 이해관계자와 임직원이 함께하는 참여형 인권 활동 추진
 - 이해관계자 대상 인권침해 사전예방의 장치 및 인권침해 사고 시 개입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행동수칙 마련

(2) 인권경영 관리 및 내재화

- 인권경영 제도 개선
 - 관련 법령과 국가정책, 인권 이슈 등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지속적인 개정 추진

- 구제절차 현황 점검 및 현행화
 - 구제절차 만족도 평가 및 의견수렴을 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 인권경영 전담조직 확대 검토 추진
 - 인권경영이 정착되어 감에 따라 인권경영을 더욱 고도화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의 확대를 검토

- 인권영향평가 실시 확대 및 개선과제 이행
 - 인권영향평가를 진흥원 외부의 이해관계자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결과 지적사항에 따른 개선과제를 이행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인권영향평가 용역

- 인권 취약 분야 제도 개선효과 측정(실효성 평가)
 - 인권경영 도입기에 수립한 제도의 개선효과를 측정하여 환류

- 인권실태조사 실시 확대
 - 인권실태조사를 진흥원 외부의 이해관계자까지 확대 실시하여 보다 폭넓은 인권 취약점을 파악하고 개선

- 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교육 콘텐츠 등 제공 및 교육실시 지원
 - 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인권침해 신고방법, 인권침해 사례 등을 담은 리플릿 제작 배포

- 인권문화 프로그램 개발
 - 직무·직급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권문화를 고도화
 - 인권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주간 운영

(3) 인권경영 고도화 및 확산

- 인권경영 2단계 추진전략 수립
 - 앞의 두 단계의 결과로 면밀한 상황 분석을 통해 다음 단계 추진전략을 수립

- 인권경영 성과체계 구축
 - 인권경영의 실행이 공고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성과체계를 구축하고 업무성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

- 인권경영 전담조직 정비
 - 인권 모니터링 및 성과를 토대로 전담조직을 정비

V. 인권경영체계 개선 및 고도화 방안

- 구체절차 평가 및 개선
 - 구체절차 만족도 평가 및 의견수렴을 하여 이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을 지속

- 인권영향평가 실시 확대 지속 및 개선과제 이행
 -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실시하고 결과 지적사항에 따른 개선과제를 이행

- 인권 취약 분야 제도 개선효과 측정(실효성 평가)
 - 인권경영 전 단계에서 보완한 제도의 개선효과를 측정하여 환류

- 인권실태조사 실시 확대 계속
 - 인권실태조사를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보다 폭넓은 인권 취약점을 파악하고 개선

- 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인권경영체계 구축 지원
 - 진흥원에 정착한 인권경영체계를 이해관계자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활동을 강화

- 외부 협력업체 인권경영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흥원 임직원의 갑질, 고용상의 비차별, 계약 위반, 환경권 보장 등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 이해관계자별 특성에 맞춘 인권경영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지원

부록

부록 1. 2022년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인권경영 실태조사 설문지

2022년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임직원 대상 인권경영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인권경영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임직원의 인권경영의식 및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귀하께서 평소 경험하고 느끼셨던 것에 대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응답자 개인정보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안심하시고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인권경영 체제 구축 수준

1. 기관의 최고경영자는 인권경영 실천의지를 적극적으로 대내외에 표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2. 기관은 인권경영 헌장 및 이행지침 제정을 통해 대내외에 인권경영 이행사항을 적절히 안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3. 기관은 인권침해행위가 발견될 경우,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제장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4. 기관은 인권리스크 도출 및 인권경영 성과 점검 등을 위해 평가체계(모니터링, 결과 공유, 개선대책 마련 등)를 적절히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5. 기관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은 수강 대상자의 인권의식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3. (위 문항에서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귀하께서 경험한 인권침해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성별에 따른 차별 대우
- ② 연고관계에 의한 차별 대우
- ③ 노동권 침해(결사 및 단체교섭 억압, 강제노동 등)
- ④ 안전·보건상 위험
- ⑤ 성희롱, 성폭력
- ⑥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지시
- ⑦ 인격무시 언행(폭언, 폭행, 외모비하 등)
- ⑧ 기타()

14. 기관의 운영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권리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5개 이하)

인권	내용
① 자유권	의견, 정보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
② 노동기본권	공정한 노동조건을 향유할 권리, 노조 가입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③ 자기결정권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
④ 평등권	성, 종교, 출신, 재산, 기타 지위 등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존중받을 권리
⑤ 사생활보호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 및 사유재산을 인정받을 권리
⑥ 참여권	공적 활동에 참여할 권리
⑦ 교육권	교육을 받을 권리.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⑧ 재산권	개인이나 그룹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⑨ 건강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⑩ 청구권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국가 법원에 의한 구제를 받을 권리
⑪ 소비자권리	소비자 보건과 안전 및 과장이나 오도 없는 광고나 마케팅을 제공받을 권리

15. 기관 내에서 인권침해행위를 경험·목격한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 ①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내부 신고제도 또는 고충처리제도 이용
- ② 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공기관에 진정 접수
- ③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
- ④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 요청(법적 대응 준비)
- ⑤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에 투고·제보
- ⑥ 인터넷, SNS 등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글 게재(기관 이미지 타격)
- ⑦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음
- ⑧ 기타()

16. 기관이 인권보호·존중에 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중복선택가능)

- ① 인권경영 이행사항 홍보 강화
- ②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매뉴얼, 사례집 등 배포
- ③ 인권경영 실태조사, 인권영향평가 등 정기적 실시 및 결과 공유
- ④ 인권경영 교육 실시
- ⑤ 인권침해 구제제도 강화(규정 보완, 홍보 강화 등)
- ⑥ 기타()

부록 2. 2022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분야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항목	지표	답변 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인권 존중 정책 선언	1	기관은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정책선언을 했다.	○					
	2	인권정책선언은 기관의 최고위 수준에서 표명된 것이다.	○					
	3	기관의 인권정책선언은 회사내부와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적절한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	○					
	4	기관의 인권정책선언은 해당 회사에서 특별히 문제될 가능성이 큰 중요한 인권 현안이 무엇인지가 표명되었다.	○					
	5	인권정책선언은 공개적이며,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					
	6	인권정책선언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선된다.	○					
소 계		6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1	기관은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				
	2	인권영향평가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인권규범을 준거로 한다.	○					
	3	인권영향평가 실행 시 기관 내·외부의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					
	4	기관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또는 집단과의 협의를 한다.		○				
	5	자회사나 협력회사의 활동도 인권영향평가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					
	6	인권영향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소 계		3	3					

항 목	지표		답변 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 조치	1	기관은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	○					
	2	기관은 인권경영 문제를 다루는 전담 부서를 설치한다.	○					
	3	기관은 인권준수 감시장치를 마련했다.		○				
	4	기관은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5	자회사나 협력회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견될 경우, 기관 차원에서 대응한다.	○					
소 계			4	1				
인권경영 성과	1	기관은 인권경영 성과를 정량적 지표 또는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확인한다.	○					
	2	인권경영 성과 확인 시 내·외부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					
	3	인권경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					
	4	인권경영 성과 보고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					
	5	보고는 기관의 활동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다.	○					
	6	보고는 시간의 추이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이고 일관적이다.	○					
	7	보고내용에 대한 검증을 거친다.		○				
소 계			6	1				
구제절차 마련	1	기관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제절차를 제공한다.	○					
	2	구제절차는 국내법 또는 국제법 등 인권규범에 기반을 두었다.	○					
	3	구제절차는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다.	○					
	4	구제절차에 따른 결과를 관련 이해 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					
	5	피해자가 기관 구제절차 이외 다른 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에 성실하게 조력 한다.	○					
	6	구제절차는 개별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그에 합당한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					
소 계			6					
합 계			25	5				

분야 2. 고용상의 비차별

항목	지표	답변 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고용상 비차별	1	기관은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2	기관은 노동자 모집·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					
	3	기관은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4	기관은 노동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5	기관은 노동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소 계		5						
고용상 남녀비차별	1	기관은 여성노동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					
	2	기관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제공한다.	○					
	3	기관은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여성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4	기관은 노동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					
	5	기관은 노동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여성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6	기관은 여성노동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					
소 계		6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1	기관은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이유로 사업장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					
	2	기관은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회사 내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편의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	○					
	3	기관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					
소 계		3						
합 계		14						

분야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보장

항목	지표		답변 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결사· 단체교섭의 자유	1	기관은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한다.	○					
	2	기관은 노동조합 등을 통해 노동자가 자유롭게 모임을 가지고 근로조건 등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3	기관은 노동조합 활동을 포함하는 노동자모임을 위해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	○					
	4	기관은 정기적으로 노동자의 대표와 단체교섭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소 계			4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1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2	노동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					
	3	노동자가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					
	4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노동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5	노동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다.	○					
소 계			5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인권영향평가 용역

항목	지표		답변 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1	기관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성실하게 협의한다.	○					
	2	기관은 노동자 대표에게 노동자 대표로서의 활동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3	기관은 경영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해고를 하는 경우에 노동자 대표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한다.	○					
	4	기관은 노동자 대표가 단체협상을 요구할 때 의사결정권이 있는 회사 대표가 참여하여 협상한다.	○					
	5	기관은 단체교섭을 통해 성립된 단체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소 계			5					
노동조합 부재시 대안적 조치	1	기관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회사는 직원들이 독립적으로 노동관련 문제를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인 조치를 제공한다.	○					
	2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에 대하여 자유롭게 논의하도록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	○					
소 계			2					
합 계			16					

분야 4. 강제 노동의 금지

항목	지표	답변 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강제 노동 금지	1	기관은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					
	2	기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 계약을 위해 노력하며, 노동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3	기관은 노동자의 행동을 제약할 목적으로 각종 신분증·여행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					
	4	기관은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의무적 초과노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					
	5	기관은 노동자를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강제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					
	6	기관은 노동자에게 부채를 안긴 후 빚을 담보로 한 강제근로를 실시하지 않는다.	○					
	7	노동자는 근무시간 이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작업장을 떠날 수 있다.	○					
	8	노동자는 누구나 합리적인 수준의 사전 통지 이후에 회사를 그만둘 수 있다.	○					
소 계		8						
자회사·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1	기관은 외국에서 활동하는 자회사나 협력회사에서 강제노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					
	2	자회사나 협력회사에서 강제노동을 이용하거나 그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					
	3	인신매매, 채무노역 등에 관여하는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지 않으며,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다.	○					
소 계		3						
합 계		11						

분야 5. 아동노동의 금지

항목	지표	답변 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연소자 고용 금지	1	기관은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					
	2	기관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15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		
	3	기관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					
	4	기관은 교육프로그램을 병자하여 고용이 금지된 연소자를 고용하는 일이 없다.	○					
	5	기관은 서류를 통해 노동자의 나이를 확인한 후 고용하며, 신분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명서의 확실성을 검토한다.	○					
	6	출생증명서가 없는 국가에서 활동하는 경우, 적절하게 나이를 확인하는 대안적 방법을 고려한다.					○	
소 계		4				2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1	연소자를 고용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고용을 중지시키기보다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거나 다른 구제조치를 취한다.					○	
	2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	
	3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	
	4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할 때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는다.					○	
	5	의무교육 대상자를 고용하는 경우, 그 고용으로 인하여 의무교육이 중지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6	기관은 아동들의 건강, 안전, 도덕의식에 해로운 작업을 규정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	
	7	기관은 장시간 노동, 야간 노동에 18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	
	8	연소자들이 노동에 적합한 체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소 계						8		
합 계		4				10		

분야 6. 산업안전 보장

항목	지표		답변 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작업상 안전	1	기관은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이도록 유지한다.	○					
	2	기관의 비상탈출구가 장애물로 막혀 있지 않으며, 항시 이용가능 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				
	3	기관 내의 환기와 실내온도, 조명, 음용수, 세면대, 의자, 작업복, 음식보관 시설, 숙소, 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	○					
	4	기관은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되도록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					
	5	기관은 유해물질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한다.		○				
소 계			3	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1	임산부, 장애인 기타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 및 위생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					
	2	기관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18세 미만자를 도덕상·보건상 위험한 사업에 근로 시키지 않는다.	○					
	3	임신을 한 노동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자의 근무지를 변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4	장애인들이 기관 내에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					
소 계			4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인권영향평가 용역

항목	지표		답변 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1	기관은 노동자들이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보호장비를 제공하며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2	노동자가 위험한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위험성에 관한 정보가 노동자에게 제공되고, 노동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				
	3	작업장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관련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					
	4	기관은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은 법이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한다.	○					
	5	기관은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노동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소 계			4	1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1	기관은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요양비 등을 지원한다.	○					
	2	요양보상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한다.	○					
	3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운영한다.	○					
소 계			3					
합 계			14	3				

분야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항목	지표		답변 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1	기관은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이행을 요구한다.			○			
	2	기관은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협력회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			
	3	기관은 모든 계약에 공급업자와 다른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다.			○			
	4	기관은 협력회사와 계약 시 인권 보호·존중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			
소 계					4			
모니터링 실시	1	기관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					
	2	기관은 모니터링 결과 협력회사의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관계의 단절을 고려한다.	○					
소 계			2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1	기관은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	
	2	기관의 보안담당 직원은 인권보호와 관련한 별도의 교육을 받는다.					○	
	3	기관이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계약을 통해 명시적으로 인권보호 준칙의 준수를 요구한다.					○	
	4	기관이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인권보호준칙이 준수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	
소 계						4		
합 계			2		4		4	

분야 8. 현지주민의 보호

항목	지표	답변 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 보호	1	기관은 토지 소유주를 비롯하여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와 협의한다.					○	
	2	관련 법령에서 기관활동과 관련하여 지역민과의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준수한다.					○	
	3	기관은 토지구매 시 법률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며, 지역주민의 법과 관습에 따른 권리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	
	4	기관은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제수단을 이용하지 않는다.					○	
	5	기관은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해 심각하게 피해를 입는 당사자나 제3자들과 협의를 한다.					○	
	6	기관은 부적절한 강제이주에 가담하거나 이주를 해야 하는 주민들로부터 부당 이득을 챙기지 않으며, 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					○	
	7	법률에서 이주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고 법률 취지에 맞는 대책을 수립, 제공한다.					○	
소 계						7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1	기관은 타인의 지식을 이용할 때 그것이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닌지 사전에 조사한다.					○	
	2	기관은 저작권이나 지적재산의 소유권을 확인할 때는 관습적으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인지를 검토한다.					○	
	3	모든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와 협상할 때는 설명을 한 후 동의를 얻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					○	
소 계						3		
합 계						10		

분야 9. 환경권 보장

항목	지표	답변 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1	기관은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다.					○	
	2	기관은 환경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한다.					○	
	3	환경개선을 위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목표가 적절한지를 점검한다.					○	
	4	기관은 기관 활동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에서 환경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	
	5	기관은 환경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노동자를 교육하고 훈련한다.					○	
소 계						5		
환경정보의 공개	1	기관은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일반 대중과 노동자에게 제공한다.					○	
	2	환경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환경 사고가 났거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가급적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 또는 제공한다.					○	
	3	환경정책을 개발할 때, 노동자, 고객, 공급자, 지역사회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과 협의한다.					○	
소 계						3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인권영향평가 용역

항목	지표	답변 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1	환경문제에 대해서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한다.					○	
	2	사업의 확장을 고려하는 경우, 이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3	환경영향평가 결과 심각한 환경영향의 가능성이 발견되면 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4	환경훼손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환경훼손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	
	5	대규모 환경오염피해를 대비하여 환경책임 보험에 가입하였다.					○	
소 계						5		
비상계획 수립	1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고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한다.					○	
	2	기관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정해진 비상사태 대응지침에 따른 대응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3	기관은 비상사태 대응계획을 해당 지역 및 당국과 함께 개발했으며, 현지주민도 대피를 포함하여 비상시 대응방법을 알고 있다.					○	
	4	기관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지역 사회, 관련당국, 외부 비상사태 용역회사에게 즉시 통보할 수 있는 경보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	
	5	기관과 병원간의 거리가 먼 경우 응급 조치를 위한 시설과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다.					○	
소 계						5		
합 계						18		

분야 10. 소비자인권 보호

항목	지표	답변 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1	기관은 추진사업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건강,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관 내 서비스 기획 및 운영 단계를 안내함에 있어서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	
	2	기관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비스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평가를 실시한다.					○	
	3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기관의 서비스의 가격정보, 기능, 사용방법 등에 관해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	
	4	기관의 사업추진 및 서비스의 홍보시 허위나 과장,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는다.					○	
	5	기관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 거래 조건, 제품특성 등을 포함하여 합리적 소비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6	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하며, 지역에 따라 현지어로 된 정보를 제공한다.					○	
소 계						6	⊗	
사업추진 이상시 조치	1	기관은 사업추진 시 위험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들에게 그 위험성을 알리고 조속히 보완한다.					○	
	2	기관의 사업추진 후 이상이 발견되면 이를 소비자에게 통보한다					○	
	3	기관의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손실을 당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한다.					○	
소 계						3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인권영향평가 용역

항목	지표	답변 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소비자 사생활 보호	1	기관은 소비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기관이 수집, 저장하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2	소비자 정보의 수집 및 관리지침이 마련되었으며, 공개되어 있다.	○					
	3	소비자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있고, 책임자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	○					
	4	소비자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며, 자발적 동의를 구한다.	○					
	5	소비자 정보는 소비자가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6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					
소 계		6					X	
합 계		6				9		

2)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1. IT산업 육성 지원

항목	지표	답변 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사업 지원 대상 선정	1	사업지원 대상 선정 시 선정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					
	2	사업지원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어 있어 참여 희망자 또는 업체들이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다.	○					
	3	사업지원 대상 선정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4	사업지원 대상업체 접수시 지원받는 업체가 인권경영 실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				
	5	사업지원 대상선정평가 결과 공개 이후 지원대상 선정 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원대상의 이의제기를 확인하고 처리한다.		○				
소 계		3	2					
사업 관리	6	업무 담당자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		○				
	7	사업지원 대상업체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않도록 인권보호 및 존중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고 서약서를 징구한다.		○				
	8	사업지원 대상업체가 지원사업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 조치에 대하여 점검하고 관리감독 하는 절차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인권영향평가 용역

항목	지표	답변 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사업관리	9	사업지원 대상자 및 업체의 지식재산권 보호 등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명시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				
	10	업무처리 과정 중 사업지원 대상자 및 업체 담당자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업무 담당자로부터 갑질 또는 무례한 언행 등 인격침해적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규정을 마련하거나 사전에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한다.		○				
	11	업무처리 과정 중 사업지원 대상자 및 업체담당자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업무 담당자로부터 갑질 또는 무례한 언행 등 인격침해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는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점검한다.		○				
	12	사업지원 대상자 및 업체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개선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					
소 계		1	6					
구제절차 및 사후관리	13	사업지원 대상자 및 업체가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의 업무처리 과정 중 인권침해 행위를 경험했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				
	14	사업지원 대상자 및 업체가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				
	15	사업수행과정에서 지원대상 업체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 발생 시 제재 조치 및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기관 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적절한 절차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				
소 계			3					
합 계		4	11					

2. CT산업 육성

항목	지표	답변 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사업지원 대상 선정	1	사업지원 대상 선정 시 선정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					
	2	사업지원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어 있어 참여 희망자 또는 업체들이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다.	○					
	3	사업지원 대상 선정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4	사업지원 대상업체 접수시 지원받는 업체가 인권경영 실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				
	5	사업지원 대상선정평가 결과 공개 이후 지원대상 선정 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원대상의 이의제기를 확인하고 처리한다.		○				
소 계		3	2					
사업관리	6	업무 담당자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		○				
	7	사업지원 대상업체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않도록 인권보호 및 존중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고 서약서를 징구한다.		○				
	8	사업지원 대상업체가 지원사업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 조치에 대하여 점검하고 관리감독 하는 절차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				
	9	사업지원 대상자 및 업체의 지식재산권 보호 등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명시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인권영향평가 용역

항목	지표		답변 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사업관리	10	업무처리 과정 중 사업지원 대상자 및 업체 담당자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업무 담당자로부터 갑질 또는 무례한 언행 등 인격침해적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규정을 마련하거나 사전에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한다.		○				
	11	업무처리 과정 중 사업지원 대상자 및 업체담당자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업무 담당자로부터 갑질 또는 무례한 언행 등 인격침해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는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점검한다.		○				
	12	사업지원 대상자 및 업체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개선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				
		소 계		7				X
구제절차 및 사후관리	13	사업지원 대상자 및 업체가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의 업무처리 과정 중 인격침해 행위를 경험했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				
	14	사업지원 대상자 및 업체가 인격침해 구제절차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				
	15	사업수행과정에서 지원대상 업체에 의한 인격침해 행위 발생 시 제재 조치 및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기관 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적절한 절차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				
		소 계		3				X
		합 계	3	12				